

Ⅱ. 학 사

- ▶ 한남대학교 학칙
- ▶ 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
- ▶ 등록에 관한 규정
- ▶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
- ▶ 시간제 학생 등록제 운영에
관한 규정
- ▶ 주요학사행정 안내

한남대학교 학칙

1983. 3. 1. 제정 1983.12.27. 변경 1984. 9.18. 변경
 1985. 8.30. 변경 1986. 3. 1. 변경 1987. 3. 1. 변경
 1987. 9. 1. 변경 1989. 5. 2. 변경 1990. 3. 1. 변경
 1991. 5.14. 변경 1992. 3. 1. 변경 1992. 5.18. 변경
 1993. 3.31. 변경 1993. 9. 1. 변경 1994. 2.21. 변경
 1994.12.13. 변경 1996. 3. 1. 변경 1996.11.20. 변경
 1997. 3. 1. 변경 1998. 3. 1. 변경 1998. 6. 1. 변경
 1999. 3. 1. 변경 1999. 7.28. 변경 1999.11. 1. 변경
 2000. 2. 1. 변경 2001. 3. 1. 변경 2002. 1. 3. 변경
 2002. 3. 1. 변경 2003. 3. 1. 변경 2003. 9. 1. 변경
 2003.10.17. 변경 2004. 3. 1. 변경 2004. 6. 8. 변경
 2004. 6.15. 변경 2004. 8.10. 변경 2004.10. 5. 변경
 2004.11. 2. 변경 2004.12. 1. 변경 2005. 2. 4. 변경
 2005. 2.23. 변경 2005. 4.26. 변경 2005. 8.23. 변경
 2005.10.18. 변경 2005.12.27. 변경 2006. 2. 6. 변경
 2006. 3.21. 변경 2006. 5.23. 변경 2006. 9.26. 변경
 2006.11.28. 변경 2007. 3. 1. 변경 2007. 9. 1. 변경
 2007.12.12. 변경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과 목표) ①한남대학교는 진리·자유·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운다.

1.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성인 양성
 - 가. 기독교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기른다.
 - 나. 인문적 소양과 미덕을 쌓아 건전한 문화를 창출한다.
2.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 양성
 - 가. 고도산업기술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첨단 지식 및 기술을 갖춘다.

나. 국제사회에 대한 안목을 넓혀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다.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다.

3.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
 가. 투철한 국가관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나.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지도자로서의 품성과 능력을 함양한다. (개정 2004.12.1)

제 2 조(편제) 본 대학교에 문과대학, 사범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경상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미술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생명·나노과학대학, 일반대학원, 사회문화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학제신학대학원, 행정정책대학원 및 국방전략대학원을 두며, 사범대에는 중등교원연수원을 둔다. (개정 2003.3.1, 2004.6.8, 2004.10.5, 2005.2.4, 2005.4.26, 2005.10.18, 2006.2.6)

제 3 조(학생정원) 각 대학의 편성학과(부) 및 학과(부) 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 4 조(대학원) 일반대학원, 사회문화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학제신학대학원, 행정정책대학원, 국방전략대학원에 대한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4.6.8, 2005.2.4, 2005.4.26, 2006.2.6)

제 5 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과 연구소를 두고, 각 기관과 연구소에 필요한 세칙은 이를 따로 정한다.

1. 부속기관 : 중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신문·방송국, 인문학술원, 국제교류원, 기독교문화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원, 평생교육원, 한국어학당, BK21 사업단, 생명나노공학연구원 (개정 2003.9.1, 2003.10.17, 2005.2.4, 2005.12.27)
2. (삭제 2004. 2. 4)
3. 부설연구소 : 인문과학연구소, 교육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경영연구소, 경제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민군겸용보안공학연구센터 (개정 2003.10.17, 2004.8.10)

제 5 조의 2(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본교는 총장 산하기구로 법인격을 가진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두고, 필요한 정관과 세칙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3.9.1)

제 2 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제 6 조(수업년한) ①본 대학교의 수업년한은 4년(건축학 전공은 5년)으로 한다. 단,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3.3.1)

②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수업년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1)

제 7 조(재학년한) ①재학년한은 수업년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편입학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년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해당학과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8 조(학년, 학기) ①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를 제1학기 와 제2학기로 나눈다.(개정 2006.9.26)

②계절학기는 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계절학기의 취득 학점은 9학점 범위 내로 한다.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수강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 9 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 10 조(정기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5. 기타 법정공휴일

제 11 조(임시휴업일) ①입학시험, 졸업식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는 제10조의 휴업일 외에도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②비상사태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9조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휴업일에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이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입 학

제 12 조(입학시기) 입학은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시기는 매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13 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14 조(제출서류) 입학은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 접수시 다음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금액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제13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입학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 15 조(입학전형) ①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및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3학년 편입학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단,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

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조(입학절차)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 대학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와 입학금 기타의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이유 없이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17 조(편입학) ①본 대학교의 제2,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전입학기 이상을 수료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다. 단, 그 인원은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이어야 하고 또한 3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에 한한다.

제 18 조(재입학) ①재입학은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적당시의 학년 이하의 학년에 허가한다.

②삭 제 (2001.3.1)

③재입학은 퇴학 전 재적하였던 학과에만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제47조(징계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게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5 장 전공배정, 전공변경(전과),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 19 조(전공배정)①전공배정은 1학년 2학기말에 소속 학부의 배정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②전공배정 신청, 기준, 인원 산정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조의 2 (전공변경(전과))

①전공변경(전과)를 희망하는 자가 3학기 이상 등록을 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

의 허가를 얻어 전공변경(전과)할 수 있다.(2007.3.1)

②삭제 (2000.2.1)

③전공변경(전과)한 자는 해당학과(부)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0 조(휴학) ①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의 휴학원에 종합병원 발행의 진단서 또는 휴학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적된다.

③병역으로 인한 휴학과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학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1학년 2학기를 수료한 자는 휴학 전에 전공 지망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1 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복학해야 할 학기초 등록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 22 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23 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포함)
4. 재학년한 내에 졸업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자퇴한 자
6. 성적경고로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7.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제 6 장 교과와 이수, 수업, 수료

제 1 절 교육과정과 이수

제 24 조(교과구분) 본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이밖에 필요에 따라 부전공과목, 복수전공

과목, 교직과목, 다전공과목 등으로 추가하여 구분할 수 있다. 교과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2.3.1)

제 25 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6 조(이수단위)①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체육,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R.O.T.C.학생의 경우에는 제3학년 및 제4학년에서 이수하는 군사학을 한 학기당 3학점씩 총 12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2.3.1)

③모든 학생은 당초 입학한 학과(부)에서 반드시 제1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본 대학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어느 특정한 전공 교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21학점 이상 선택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다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3.1)

제 2 절 수업 및 이수학점

제 27 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개강 전에 총장이 이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 28 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수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정 절차를 완료치 못한 자는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③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9 조(이수학점)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 이상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성적우수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20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초과 이수 할 수 있다.

제 30 조(학점교류) ①본교와 협정관계에 있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 또는 정부나 국가 기관 등에서 파견하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35학점 범위내에서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6.8)

②본교 학생은 대학원(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4학년 학생에 한하며, 학기당 3학점까지 인정한다.

제 30 조의 2 (국내외 대학과의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복수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1)

제 31 조(계절학기수업) 소정학기 외에 계절학기 수업을 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2 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한 후 본 대학교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3 조(재입학생의 학점인정)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참작하여 학점을 재 사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절 수료

제 34 조(수료학점인정)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1, 2003.3.1, 2007.9.1)

수료학년 \ 졸업학점	136학점	140학점	150학점	165학점
1학년	34학점	35학점	37학점	33학점
2학년	68학점	70학점	75학점	66학점
3학년	102학점	105학점	112학점	99학점
4학년	136학점	140학점	150학점	132학점
5학년				165학점

제 7 장 시험과 성적

- 제 35 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 학기말시험을 행하며, 그 외의 시험도 부과할 수 있다.
- 제 36 조(출석) ①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교과목당 결석일수가 그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서 정한 결석 허용 한계를 초과한 학생의 해당교과목 성적을 과목낙제로 처리한다.
- 제 37 조(추가시험) 병역, 질병,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전에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 성적은 B+ 급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38 조(특별학점 인정) 학점취득 특별시험과 특별학점 인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개정 2003.3.1)
 ①학점취득 특별시험은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며, 시험에 합격한 과목은 해당과목의 학점취득으로 인정하고 당해 과목의 수강은 면제한다.
 ②자격증 및 외부시험으로 인정받은 성적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기타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39 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교과목별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실험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 40 조(성적분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급	실 점	평 점	등급	실 점	평 점
A ⁺	97 - 100	4.5	C ⁺	77 - 79	2.5
A ^o	94 - 96	4.3	C ^o	74 - 76	2.3
A ⁻	90 - 93	4.0	C ⁻	70 - 73	2.0
B ⁺	87 - 89	3.5	D ⁺	67 - 69	1.5
B ^o	84 - 86	3.3	D ^o	64 - 66	1.3
B ⁻	80 - 83	3.0	D ⁻	60 - 63	1.0
			F	0 - 59	0.0(낙제)

제8 장 졸업 및 학위

- 제 41 조(졸업)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40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전공)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따로 정한다. 그 성적은 전체 평점평균 2.0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3. 1, 2003. 3. 1, 2006. 9. 26)
 ①학칙 제6조의 단서에 의하여 조기졸업 할 수 있는 자는 전항의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 (건축학전공은 165학점)이상 이수한 자로서 그 성적의 전체 평점평균이 4.20 이상으로 한다.
 ②입학정원 외의 졸업대상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사편입자, 농어촌학생, 군위탁생, 특수교육대상자로 한다.
 ③졸업시기는 매년 전·후기로 하되 후기졸업 대상은 조기졸업,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1학기말에 졸업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④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학생에 대한 졸업요건은 따로 정한다.
 ⑤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42 조(졸업논문) ①졸업예정자는 졸업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졸업논문의 제출이 부적당한 학과(부)에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졸업논문은 2인 이상의 전임교수의 사정을 거쳐 판정한다.
 ⑤실기발표(작품발표)의 경우는 전시회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으로 전임교수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실시케하고 그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⑥다전공자는 제1전공 및 제2전공의 졸업논문(종합시험 또는 졸업작품)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⑦졸업논문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증명서만 교부할 수 있다.
 ⑧졸업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차후 심사 기간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⑨졸업논문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3 조(학위)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1에 의하여 별표2의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다전공 학생은 제1전공과 동일한 학위증서번호로 제2,3전공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9 장 포상과 징계

제 44 조(포상) 학생으로서 학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 45 조(수강신청 학점제한)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이 1.50미만인 자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에 학점을 제한한다. 수강신청 학점제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6 조(학사경고) ①학기당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부과하는 경우 교무 입학처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1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도록 소속학과(부)장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제 47 조(징계처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장 또는 학생특별지도위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및 퇴학처분을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이 열등하여 성업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5.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 10 장 학생활동

제 48 조(학생회) ①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한남대학교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중지된다.

③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④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9 조(학생임원 자격기준) (삭제 2006.4.25)

제 50 조(학생지도위원회) ①학생생활과 학생 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단과대학에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전교수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학과장이 된다.

③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학생상벌, 학생복지 및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심의한다.

제 51 조(학생특별지도위원회) ①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2개 대학 이상의 학생이 관련된 경우 대학간 조정 및 원활한 지도를 위하여 학생특별지도위원회를 둔다.

②학생특별지도위원회 구성은 따로 정한다.

제 52 조(학생경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3 조(학생지도) 총장 또는 학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54 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적 행위와 본교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55 조(집회)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대학(교)과의 연합행사
2.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회
3.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 56 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 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납입금

제 57 조(입학금)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8 조(납입금) ①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시 소정기일 내에 납입금과,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없이 전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적된다.

②실험실습, 실기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따로 징수한다.

③다전공 학생의 제1전공과 제2,3전공의 계열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계열별 등록금의 차액을 징수한다.

④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퇴학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⑤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납입금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9 조(기성회비 등) 삭 제

제 12 장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제 60 조(위탁생) 위탁생은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락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1 조(외국인학생) ①외국인 및 교포학생이 입학(편

입학 포함)을 원할 때에는 제4장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정원 외로 입학(편입학 포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②외국인 학생으로서 대학입학(편입학 포함) 자격이 있을 때는 정규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한다.

③외국인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학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62 조(학칙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13 장 장학금

제 63 조(장학금) ①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특기자,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 교직원 직계자녀, 교육자 직계자녀, 교역자 직계자녀 등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직 제

제 64 조(직제) ①본 대학교에 총장 외에 다음 같은 교원과 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단, 모든 교직원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한다.

1.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2. 직원 : 참여, 부참여, 참사, 부참사, 주사, 부주사, 서기, 부서기

②제1항의 교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와 임시서기기를 둘 수 있다.

③본 대학교의 각 대학에 학장과 대학원에 원장을 두고 교수로서 겸무하고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다만, 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비정년계열로 임용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경우 협동학장 또는 협동대학원장을 둘 수 있으며, 교무위원중에서 겸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8.23)

④본 대학교의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5 장 교수회

제 65 조(구성)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수회를 둔다.

1. 교수회는 전체 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로 나눈다.
2.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한다. 단, 총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강사 및 해당 직원을 출석케 할 수 있다.
3.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대학별교수회는 학장이 소집 하며, 그 의장이 된다. 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66 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특별한 자문에 응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심의 할 수도 있다.(개정 2006. 9. 26)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16 장 교원

제 67 조(특별임용교원) ①본 대학교에 특별임용교원을 둘 수 있다.

②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8 조(명예교수) ①본 대학교에 명예교수를 둘 수 있다.

②명예교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9 조(전임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69 조의 2(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재임용) 본 대학교 교원의 재계약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따르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2.23)

제 17 장 교무위원회

제 70 조(설치 및 구성) 본 대학교의 교육,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①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교목실장, 각 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한다.

②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71 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대학원, 학과 및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추가모집, 편입학 및 재입학 사정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2 조(각종 위원회) ①본 대학교의 교육, 연구 및 학 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 장 특별과정

제 73 조(설치 및 시행) ①본 대학교의 특별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부설로 특별과정을 설치 할 수 있다.

②특별과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장 공개강좌, 시간제등록, 가상대학, 학점은행제, 해외복수학위과정

제 74 조(공개강좌) 본 대학교는 직무, 교양연수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 을 희망 하는 자를 널리 지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 75 조(공개강좌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수강료 징수, 기타에 관한 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6 조(시간제등록) ①본 대학교는 열린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 학생 등록제를 둘 수 있다.

②시간제 학생의 선발방법, 선발인원 및 이수학점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6 조의 2(학점은행제) ①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종류와 전공이 유사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교양30학점 이상, 전공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중에서 84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되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총장은 별도서식(2)에 의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할수 있다. (신설 2003.9.1) (개정 2005.8.23)

②학점은행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6 조의 3(해외복수학위과정) 해외자매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하여 해외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자격, 이수학점, 학점인정, 학위수여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3.1)

제 77 조(가상대학) ①본 대학교는 가상대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가상대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0 장 학교기업

(신설 2004. 6.15)

제 78 조(학교기업 설치) ①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명칭을 '한남대학교 린튼바이오 학교기업'(이하 '린튼바이오 학교기업')이라 한다.

②린튼바이오 학교기업은 교지(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에 설치한다.

③린튼바이오 학교기업은 생명나노과학부 생명공학전공과 연계하여 '친환경생명공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내용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8, 2006. 11. 28)

제 79 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린튼바이오 학교기업

에서의 현장실습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현장실습교육을 30시간 이수한 경우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80 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①학교기업 운영성과 발생시 순이익의 4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교직원의 연 보수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21 장 보 칙

제 81 조(학칙개정절차) 본 학칙의 개정은 기획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제 82 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3 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전대학교 대전분교에 입학하여 재적하는 학생은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한남대학의 해당 소속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1982학년도 이전에 외국어교육과에 입학 및 전공 학과를 배정 받은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83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영어교육과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83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단, 변경학칙 중 제42조 ①항은 198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4학년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83학년도 이전에 수학과(야간강좌 개설학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칙변동(복학)으로 인하여 1984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전자계산학과(야간강좌 개설학과) 및 수학과(주간)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8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한남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한남대학교의 각 대학 해당 학과, 해당 학년에 1986년 3월 1일자로 편입한 것으로 본다.
- 2. 이 학칙 중 제33조 제③항, 제34조, 제42조 본문 및 제①항의 변경사항은 1986학년도 법학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1. 미술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

- 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명으로 한다.
- 2. 가정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명으로 한다.
- 3. 수학과(야간강좌)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20명으로 한다.
- 4. 물리학과(야간강좌)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명으로 한다.
- 5. 화학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명으로 한다.
- 6. 상업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명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3조, 제33조, 제35조 및 제42조 제②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하며, 졸업정원제도로 입학한 학생 중 미등록사경고 및 휴학기간 초과로 인한 제적자는 이 변경 학칙 제18조 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88학년도 이전에 전자계산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 학칙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8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전자계산공학과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90학년도 이전에 도서관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91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문헌정보학과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적학생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8조 및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1995학년도 이전에 상업교육과로 입학한 학생중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95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자는 경영정보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2.1995학년도 이전 경영학과, 회계학과 입학생중 학적변동(복학·재입학)으로 인하여 1996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자는 변경된 학칙에 의한 경영학부(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11월20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 전에 제적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의 전자계산공학과, 토목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각각 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0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1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가.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와 “미생물학과”는 “자연과학부”로,
나. 경상대학 “중국학과”와 “경제학과”는 “중국·경제학부”로 본다.
2. 1997학년도 이전에 가정교육과로 입학한 학생은 가정교육과로 졸업할 수 있다.
3. 이 학칙 변경 당시의 사회체육학과에 재적하고 있

는 자는 생활체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4. 이 학칙 변경 당시의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경영학부(회계학전공)에 재적하고있는 자는 각각 경영학과, 회계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1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2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문헌정보학과”는 “인문학부”로
 - 나.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와 “일어일문학과”는 “영일어문학부”로
 - 다.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과”는 “유럽어문학부”로
 - 라. 문과대학 “철학과”와 “사학과(야간강좌 개설학과)”는 “역사철학부”로 단,1998학년도 이전에 사학과(야간강좌 개설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 변동(복학,재입학)으로 인하여199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역사철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 마. 문과대학 “응용미술과”와 “회화과”는 “미술,조형디자인학부”로
 - 바. 이과대학 “식품영양학과”와 “의류학과”는 “응용과학부”로
 - 사.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와 “전자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는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로
 - 아.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와 “토목환경공학과”는 “건축,토목환경공학부”로
 - 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와 “기계공학과”는 “산업기계공학부”로
 - 차.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와 이과대학 “고분자학과”

는 “화공,고분자공학부”로 단,1998학년도 이전에 고분자학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재입학)으로 인하여 199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화공,고분자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 카. 경상대학 “경영학과”와 “회계학과”와 “무역학과와 “경영정보학과”는 “경영학부”로
- 타. 경상대학 “응용통계학과”는 “중구,경제학부”로
- 파.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와 “정치외교학과”와 경상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는 “사회과학부”로
- 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야간강좌개설학과)”와 “아동복지학과”는 사회복지학부” 로 단,1998학년도 이전에 사회복지학과(야간강좌 개설학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 변동(복학,재입학)으로 인하여 199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사회복지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 거. 경영학부 창업전공과 중구,경제학부 하이테크산업전공, 사회과학부 광고홍보학전공은다전공시 제2전공 이상로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변경 당시의 하이테크산업전공을 다전공하고 있는 자는 하이테크비즈니스를 다전공하는 자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전공 배정 결과는 이 변경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학칙중 제19조의 2는 200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의 전과(부) 시기는 변경 전 학칙(제2,3학년 재학 중 1회에

- 한하여 학기초에 전과〔부〕신청을 적용한다.
2. 제58조 제3항은 2000학년도 1학기 다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하되, 1999학년도 2학기까지다전공을 신청하여 이수중인 자에게는 소급하지 않는다.
 3. 학부로 통합되는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와 멀티미디어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2학년도까지 입학 당시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3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4. 이 학칙 변경 당시의 역사철학부,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산업기계공학부, 중국·경제 학부, 사회과학부(지역개발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각각 역사·철학부, 조형예술학부, 산업공·기계공학부,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 사회과학부(도시·지역계획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다만, 1999학년도 이전에 역사철학부,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산업기계공학부, 중국·경제학부, 사회과학부(지역개발학전공)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재입학)으로 인하여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역사·철학부, 조형예술학부, 산업공·기계공학부,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 사회과학부(도시·지역계획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의 생물학과, 생물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과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19조의2의 2호는 1999학년도 입학자와 2002학년도 전기졸업자부터 적용한다.
2. 문과대학 “인문학부”를 “국어국문학부”와 “문헌정보학과”로 하고, 2001년도 이전에 “인문 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어국문학부”와 “문헌정보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부(과)의 전공이나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

- 대로 배정할 수 있다.
3. 문과대학 “영·일어문학부”를 “영어영문학부”, 일어일문학과”로 하고, 2001년도 이전에 “영·일어문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영어영문학부”와 “일어일문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부(과)의 전공이나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 할 수 있다.
 4. 이과대학 “응용과학부”를 “식품영양학과”와 “의류학과”로 하고, 2001년도 이전에 “응용과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식품영양학과”와 “의류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5. 공과대학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에 “전자정보통신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전공”을 두고, 2001년도 이전에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전자정보통신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다만, 2001년도 이전의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에 재적하던 학생이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 된 학부의 전공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고, “컴퓨터멀티미디어전공”에 재적하던 학생이 동일 전공으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컴퓨터공학전공”과 “멀티미디어전공”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6. 이 학칙 변경 당시 공과대학 산업공·기계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산업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산업시스템공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1년도 이전에 “산업공·기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7. 경상대학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를 “중국·경

제학부"와 "정보통계학과"로 하고, 2001년도 이전에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 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중국·경제학부"와 "정보통계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부(과)의 전공이나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8. 이 학칙변경 당시 사회복지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사회·아동복지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9.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를 "사회과학부"와 "여성경찰행정학과"로 하고, 이 학칙 변경당시 "여성경찰행정학전공"을 모집단위로 입학한 자는 "여성경찰행정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10. 제26조의제2항은 2002학년도부터 4학년에게도 변경된 학점을 적용하며, 제34조와 제41조는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변경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3학년도 대학학생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모집단위가 변경된 건축·토목환경공학부(건축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의 경우 해당 입학연도 입학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당해 모집단위가 없을 때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건축학부 또는 토목환경공학부 또는 토목환경공학부 재적생(전공미배정자)이 학적변동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인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또는 토목환경공학부 또는 토목환경공학부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건축·토목환경공학부 재적생(전공미배정자)이 학적변동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이 변경학칙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학칙 변경 당시 "유럽어문학부(불어 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유럽어문학부(프랑스어문학전공, 독일어문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3학년도 이전에 "유럽어문학부"로 입학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 2. 이 학칙 변경 당시 "화공·고분자공학부(화학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화공정보신소재공학부(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생명정보신소재공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3학년도 이전에 "화공·고분자공학부"로 입학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 3. 이 학칙변경 당시 "법학부(지적재산권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법학부(특허법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3학년도 이전에 "법학부"로 입학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학칙 변경 당시 학부에서 학과로 되

는, 다음의 학부에 재적하는 학생은 2007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8학년도부터는 각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학적변동으로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로 복학, 재입학 한다.

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과 “문예창작전공(야)”은 각각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로

나. 문과대학 역사·철학부 “사학전공”과 “철학전공”은 각각 문과대학 “사학과”와 “철학과”로

다. 이과대학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학전공”과 “미생물학전공”은 각각 이과대학 “광·전자물리학과”와 “생명공학과”로

라. 공과대학 생명화공정보신소재공학부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과 “생명정보신소재공학전공”은 각각 공과대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와 “생명정보신소재공학과”로

마.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에서 “산업시스템공학전공(야)”을 폐과하여 “산업시스템공학전공”과 “기계공학전공”은 각각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와 “기계공학과”로

바.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경영학전공(야)”, “회계학전공(야)”, “국제통상학전공(야)”은 각각 경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야)”, “회계학과(야)”, “국제통상학과(야)”로

사.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정치언론·국제학전공”, “도시·지역계획전공”, “행정학전공(야)”은 각각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치언론·국제학과”, “도시부동산학과”, “행정학과(야)로

2. 이 학칙 변경 당시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동일 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영어영문학부(아동영어학전공(야))으로 복학, 재입학 한다.

3. 이 학칙 변경 당시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회화전공”, “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야)”에 재적하고 있

는 자는, 각각 신설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회화과”, “디자인학과(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회화과”, “디자인학과(야)로 복학, 재입학 한다.

4. 이 학칙 변경 당시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전자정보통신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동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부 전공(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으로 복학, 재입학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4년도에 실시되는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서는 현행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 학부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된 재적생은 소속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대학 학부(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005학년도 편제		2006학년도 편제	
대학명	학부 및 학과	대학명	학부 및 학과
이과대학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이과대학	수학과
	자연과학부 화학전공	생명·나노과학대학	나노과학부 화학전공
	자연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나노과학대학	바이오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바이오과학부 생명공학전공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바이오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멀티미디어전공	공과대학	멀티미디어학부(멀티미디어전공)
	산업시스템공학과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나노과학부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생명정보신소재공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나노과학부 신소재공학전공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상대학	무역학과
	중국경제학부 중국전공	경상대학	중국통상경제학부(중국통상전공, 경제전공)
사회과학대학	여성경찰행정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글로벌칼리지	글로벌학부	런튼글로벌칼리지	글로벌학부

② 또한 2005학년도에 학부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된 재적생도 2005학년도 편제명칭으로 소속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학부(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004학년도 편제		2005학년도 편제	
대학명	학부 및 학과	대학명	학부 및 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부 문예창작전공	문과대학	문예창작학과
	역사철학부 철학전공	문과대학	철학과
이과대학	역사철학부 사학전공	문과대학	사학과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학전공	이과대학	광·전자물리학과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경상대학	회계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사회과학부 정치언론·국제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정치언론·국제학과
	사회과학부 도시·지역계획전공	사회과학대학	도시부동산학과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야간강좌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강좌의 재적생이 학적변동(복학)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동일학부(전공), 동일학과 주간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폐지년도	학과(전공)명	주간으로 소속변경 대상자
2002	기계공학과(야)	2005년 2월 이후 졸업하는 기계공학과(야) 학생
2005	산업경영공학과(야)	2008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산업경영공학과(야) 학생
2006	컴퓨터공학과(야)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컴퓨터공학과(야) 학생
2006	회계학과(야)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는 회계학과(야) 학생
2006	무역학과(야)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는 무역학과(야) 학생
2006	법학부 법학전공(야)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는 법학부 법학전공(야) 학생

2.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강좌의 재적생은 동일학과 주간강좌로 재입학할 수 있다.
 3. (주·야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문예창작학과(야)의 2004년도 이전 입학생중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2008년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과 주간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4. 2005년 명칭 변경된 영어영문학부(아동영어학전공(야))의 재적생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부(전공)명 또는 변경된 학부(전공)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야간강좌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강좌의 재적생은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시 다음과 같이 동일학부(전공), 동일학과 주간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로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폐지년도	학과(전공)명	주간으로 학적변동 대상자
2007	경영학과(야)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는 경영학과(야) 학생
2007	행정학과(야)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는 행정학과(야) 학생
2007	사회복지학전공(야)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사회복지학전공(야) 학생
2007	디자인학과(야)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는 디자인학과(야) 학생

2. (주·야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아동영 어학전공(야)의 2006년도 이전 입학생중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2010년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과 주간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3. (학부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회과학대학의 “사회·아동복지학부” 를 “사회복지학과” 와 “아동복지학과”로 학과전환을 하고 2006년도 이전에 “사회·아동복지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7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사회복지학과” 와 “아동복지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②생명·나노과학대학의 “바이오과학부”를 “생명과학과” 와 “식품영양학과”로 학과전환하고 2006년도 이전에 “생명·나노과학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7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명·나노과학대학”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복학(재입학)할 경우는 분리된 학부의 전공이나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4. (학부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의 “나노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나노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	학과(부)	입학년도별 입학정원										비고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경상 대학	계	550(130)	550(130)	550(130)	550(130)	550(130)	550(130)	550(130)	570(130)	570(130)	520(130)	
	경영학부		410(130)	410(130)	410(130)	410(130)	410(130)	410(130)				
	경영학전공								150(50)	150(50)	150(50)	주·/야
	회계학전공								140(40)	140(40)	140(40)	주·/야
	국제통상학전공								80(40)	80(40)	80(40)	주·/야
	경영정보학전공											
	경영학과	150(50)										주/야
	회계학과	140(40)										주/야
	국제통상학과	80(40)										주/야
	경영정보학과	40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					140	140	140	80			
	중국전공											
	경제전공											
	정보통계전공											
중국·경제학부	100	100	100	100								
중국전공									40			
경제전공									40			
정보통계학과	40	40	40	40					40	40	40	
지역개발학과									40	40	40	
법과 대학	계	155(35)	160(40)	160(40)	160(40)	160(40)	160(40)	160(60)	160(60)	130(50)	120(40)	
	법학부	155(35)	160(40)	160(40)	160(40)	160(40)	160(40)	160(60)				
	법학전공								160(60)	130(50)	120(40)	주/야
특허법학전공												
사회 과학 대학	계	310(80)	310(80)	310(80)	310(80)	310(80)	280(80)	280(80)	210(90)	170(90)	160(80)	
	사회과학부		160(40)	160(40)	160(40)	190(40)	160(40)	160(40)				
	행정학전공								80(40)	80(40)	80(40)	주/야
	정치인론·국제학전공								40	40	40	
	도시·지역계획전공											
	여성경찰행정학전공					30						
	행정학과	80(40)										주/야
	정치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여성경찰행정학과	30	30	30	30							
사회·아동복지학부	120(40)	120(40)	120(40)	120(40)	120(40)	120(40)	120(40)					
사회복지학전공								50(50)	50(50)	40(40)	주·/야	
아동복지학전공								40				
미술 대학	계	160(40)										
	디자인학과	100(40)										주/야
	회화과	60										
글로벌 칼리지	계	45										
	글로벌 학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아트전공)	45										
총 9개 학부 33개 학과		3,000 (365)	3,000 (460)	3,000 (460)	3,000 (460)	3,000 (460)	2,970 (460)	2,910 (440)	2,860 (490)	2,660 (480)	2,470 (420)	

※()밖은 주간·야간 학과를 포함한 수이며, ()안은 야간학과 인원수임.

- '96학년도 경영학부제 실시 이전에는 [경영학전공]은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은 회계학과의 정원임.
- '96학년도 '경영정보학과' 이전의 명칭은 '상업교육과'이었음.
- '96학년도 '법과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분리 이전의 명칭은 '법정대학'이었음.
- '97학년도 컴퓨터공학과' 이전의명칭은 '전자계산공학과'이었음.
- '97학년도 '토목환경공학과' 이전의 명칭은 토목공학과'이었음.
- '98학년도 자연과학부 실시 이전에는 [수학전공]은 수학과, [물리학전공]은 물리학과, [화학 전공]은 화학과, [생물학전공]은 생물학과, [미생물학전공]은 미생물학과의 정원임.
- '98학년도 '생활체육학과' 이전의 명칭은 '사회체육학과'이었음.
- 경영학부 [경영학전공,회계학전공]은 '98학년도부터 경영학과, 회계학과로 환원됨.
- '98학년도 중국·경제학부 실시 이전에는 [중국학전공]은 중국학과, [경제학전공]은 경제학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인문학부 실시 이전에는 [국어국문학전공]은 국어국문학과,[문헌정보학전공]은 문헌정보학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영·일어문학부 실시 이전에는 [영어영문학전공]은 영어영문학과,[일어일문학전공]은 일어일문학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유럽어문학부 실시 이전에는 [불어불문학전공]은 불어불문학과,[독어독문학전공]은 독어독문학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역사철학부 실시 이전에는 [철학전공]은 철학과, [사학전공]은 사학과(야)의 정원임.
- '99학년도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실시 이전에는 [공예·디자인전공]은 응용미술과, [회화전공]은 회화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광·전자물리학전공' 이전의 명칭은 '물리학전공'이었음
- '99학년도 응용과학부 실시 이전에는 [식품영양학전공]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전공]은 의류학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영·일어문학부 실시 이전에는 [영어영문학전공]은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전공]은 일어일문학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 실시 이전에는 [컴퓨터공학전공]은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전공]은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전공]은 정보통신공학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건축·토목환경공학부 실시 이전에는 [건축공학전공]은 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전공]은 토목환경공학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산업·기계공학부 실시 이전에는 [산업공학전공]은 산업공학과, [기계공학전공]은 기계공학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화공·고분자공학부 실시 이전에는 [화학공학전공]은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전공]은 이과대학 고분자학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경영학부 실시 이전에는 [경영학전공]은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은 회계학과,[국제통상학전공]은 무역학과, [경영정보학전공]은 경영정보학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중국·경제학부 실시 이전에는 [정보통계전공]은 응용통계학과의 정원이며 [중국정원]과 [경제전공] 실시 이전의 중국학과와 경제학과 정원에 각각 10명씩 증원된 정원임.
- '99학년도 사회과학부 실시 이전에는 [행정학전공]은 행정학과, [정치언론·국제학전공]은 정치외교학과, 지역개발학전공은 경상대학 지역개발학과'의 정원임.
- '99학년도 사회복지학부 실시 이전에는 [사회복지학전공]은 사회복지학과(야) 정원(10명 감원)에 신설된 사회복지학전공 주간 정원을 합산한 정원이며, [아동복지학전공]은 아동복지학과'의 정원임
- 2000학년도 역사·철학부 이전의 명칭은 역사철학부'이었음.
- 2000학년도 조형예술학부 이전의 명칭은 미술·조형디자인학부이며 [디자인전공]은 [공예·디자인전공]이었음.
- 2000학년도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의 [컴퓨터멀티미디어전공]은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주)]과 멀티미디어학부의 [컨텐츠전공]과 [비즈니스전공]의 정원이며, [전자정보통신전공]은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의 [전자공학전공]과 [정보통신공학전공]의 정원으로 BK21사업에 의해 통합되었음.
- 2000학년도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야)]은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의 [컴퓨터공학

- 전공(야)의 정원으로 BK21사업에 통합되지 않았음.
- 2000학년도 산업공·기계공학부 이전의 명칭은 산업·기계공학부이었음.
- 2000학년도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 이전의 명칭은 중국·경제학부이었음.
- 2000학년도 사회과학부의 [도시·지역계획전공] 이전의 명칭은 [지역개발학전공]이었음.
- 2001학년도 자연과학부의 [생명과학전공] 이전의 명칭은 [생물학전공]이었음.
- 2001학년도 사회과학부의 [여성경찰행정학전공]은 30명 정원의 별도 모집단위로 신설되었음.
- 2002학년도 조형예술학부의 [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야)]은 40명 정원으로 신설되었음.
- 2002학년도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는 전자정보통신전공(10명증원), 컴퓨터공학전공(야간)정원, 컴퓨터멀티미디어전공에서 분리된 컴퓨터공학전공(20명 증원)과 멀티미디어전공(30명감원)의 정원을 합산한 정원임.
- 2002학년도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이전의 명칭은 산업공·기계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전공] 이전의 명칭은 산업공학전공이었음.
- 2002학년도 [여성경찰행정학과] 이전의 명칭은 [여성경찰행정학전공]이었음.
- 2002학년도 [사회·이동복지학부] 이전의 명칭은 사회복지학부이었음.
- 2005학년도 '아동영어학전공(야)'이전의 명칭은 '영어영문학전공(야)'이었음
- 2005학년도 '디자인학과(야)'이전의 명칭은 '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야)'이었음
- 2005학년도 '생명공학과'이전의 명칭은 '미생물학전공'이었음
- 2005학년도 '도시부동산학과'이전의 명칭은 '도시·지역계획전공'이었음
- 2005학년도 글로벌칼리지에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아트전공"(정원45명)을 신설함 (법학부 법학전공(야)에서 5명, 생명화학정보신소재공학부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에서 10명,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야)에서 10명,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산업시스템공학전공(야)에서 20명)
- 2004학년도 이전의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

- 창작전공(야)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와 정원임.
- 2004학년도 이전의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야)는 아동영어학전공(야)의 정원임
- 2004학년도 이전의 역사·철학부 사학전공, 철학전공은 문과대학 사학과,철학과의 정원임
- 2004학년도 이전의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회화전공, 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야)는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회화과, 디자인학과(야)의 정원임
- 2004학년도 이전의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학전공, 미생물학전공은 이과대학 광·전자물리학과, 생명 공학과의 정원임
- 2004학년도 이전의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경영학전공(야), 회계학전공(야), 국제통상학전공(야)은 경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 정보학과, 경영학과(야), 회계학과(야), 국제통상학과(야)의 정원임
- 2004학년도 이전의 생명화학정보신소재공학부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에서 공과대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로 10명 감소되었으며, 생명화학정보신소재공학부 생명정보신소재공학전공은 공과대학 생명정보신소재공학과와 정원임
- 2004학년도 이전의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전공에서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로 20명 증원되었으며 (산업시스템공학과(야,40명) 폐과, 주간 산업시스템공학과로 20명, 글로벌칼리지로 20명 조정),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와 정원임
- 2004학년도 이전의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자정보통신전공의 정원은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의 정원임
- 2004학년도의 법학부 법학과(야) 정원을 5명 감원함
- 2004학년도의 생명화학정보신소재공학부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의 정원을 10명 감원함
- 2004학년도의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전공(야/정원40명)을 폐과함
- 2004학년도의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야)의 정원을 10명 감원함
- 2004학년도의 조형예술학부를 미술대학으로 변경하여 신설함

(별표 2)

학위종별	학 과 (부)	
문 학 사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문헌정보학과,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아동영어학전공), 일어일본학과, 유럽어문학부(프랑스어문학전공, 독일어문학전공), 철학과, 사학과, 기독교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역사교육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사	아동복지학과	
이 학 사	수학과, 광·전자물리학과, 나노과학부(화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수학교육과	
공 학 사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전자정보통신전공),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학부(멀티미디어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기계공학과, 생명나노과학부(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사 (전자공학심화)	전자공학 심화프로그램
	공학사 (정보통신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 심화프로그램
	공학사 (컴퓨터공학심화)	컴퓨터공학 심화프로그램
	공학사 (건축공학심화)	건축공학 심화프로그램
	공학사 (산업경영공학심화)	산업경영공학 심화프로그램
	공학사 (기계공학심화)	기계공학 심화프로그램
	공학사 (토목환경공학심화)	토목환경공학 심화프로그램
공학사 (나노생명화학공학심화)	나노생명화학공학 심화프로그램	
	(개정 2007.3.1)	
건축학사	건축학부(건축학전공)	
멀티미디어학사	멀티미디어학부(미디어영상전공)	
경 영 학 사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창업전공, 광고홍보학전공, 컨벤션산업학과	
경 제 학 사	중국통상·경제학부(중국통상전공, 경제전공), 정보통계학과, 하이테크비즈니스전공	
법 학 사	법학부(법학전공, 특허법학전공)	
행 정 학 사	행정학과, 도시부동산학과, 경찰행정학과	
정 치 학 사	정치언론·국제학과	
미 술 학 사	미술교육과, 디자인학과, 회화과, 예술문화학과	
체 육 학 사	생활체육학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아트 학사	글로벌학부(글로벌커뮤니케이션아트전공)	

(서식1)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 과정(과정, 부
전공)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한 남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_____

(서식2)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위 사람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 남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한남대학교-학점-연도-일련번호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1977. 9. 1 제정	1999. 11. 1 개정
2000. 2. 1 개정	1996. 6. 1 개정
1996. 12. 12 개정	2001. 3. 1 개정
1997. 8. 1 개정	2001. 11. 26 개정
1998. 8. 4 개정	2002. 3. 1 개정
1999. 3. 1 개정	2003. 3. 1 개정
1999. 7. 28 개정	2003. 9. 1 개정
2003. 12. 2 개정	2004. 8. 10 개정
2004. 11. 2 개정	2004. 12. 1 개정
2005. 4. 26 개정	2005. 8. 23 개정
2006. 2. 6 개정	2006. 6. 27 개정
2006. 9. 26 개정	2007. 2. 6 개정
2007. 3. 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세칙은 한남대학교 학칙에 의거 학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 2 조(등록) ①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제적된다.

②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절학기, 시간제등록(수강료) 및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학점등록을 인정하여 학점단위로 징수한다. 단 학점당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4.12.1)
2. 4학년(건축학전공 5학년) 2학기까지 전 정규과정을 마친 자로서 학점미달로 졸업을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게 된 경우 잔여 학점수가 3학점 이하일 때는 등록금의 6분의 1, 잔여 학점수가 4학점 이상 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 잔여 학점수가 7학점 이상 9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이 없는 과목(체플, 교양세미나)의 수강에 따른 등록금은 납입하지 않으나, 등록금 이외의 기타 납입금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 2003.3.1, 2007.3.1)

3.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만 4주가 경과되기 이전에 일반(가사, 질병, 기타) 휴학한 자가 일정기간 이후 복학하는 경우 등록금액이 휴학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단, 군입대연장 휴학원을 제출하고 제대 복학하는 경우는 그 차액을 면제한다.
4.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만 4주가 경과된 이후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전액 징수한다.
5. 중간고사를 포기하고 군입대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징수한다.
6.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당해 학기 중간고사 이전에 군입대 휴학한 자가 제대 복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은 면제하고 기타 납입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7. 다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제1전공과 제2,3전공의 계열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계열별 등록금의 차액을 다전공 신청시부터 취소 이전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전공 이수 신청 기간동안 제2,3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징수한다.
8.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퇴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9. 징계처벌로 무기정학 중에 있는 자도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0. 이미 납입된 등록금은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1. 해외인턴쉽 및 한남인턴쉽(이하 "인턴쉽"이라 한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6. 9. 26)

제 2 조의 2(등록금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할 하지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 학기 개시일 이전일 경우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을 반환한다.

③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당해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까지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등록금의 5/6 해당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7.3.1)
- 2. 당해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전까지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등록금의 2/3 해당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7.3.1)
- 3. 당해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까지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등록금의 1/2 해당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7.3.1)
- 4.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및 신설 2004. 11. 2)

제 3 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 자 하는 교과목을 확인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 수강에 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학기당 16~24학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학업성적 능력에 따른 수강신청학점의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직전 학기 평점평균 4.20 이상 : 24학점까지
 - ㉡ 직전 학기 평점평균 4.00 이상 : 21학점까지
 - ㉢ 직전 학기 평점평균 1.50~3.99 : 19학점까지
 - ㉣ 직전학기 평점평균 1.50미만(학사경고) : 16학점까지 (개정 2002. 3. 1)
- 2. 최종학기 수강신청은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3.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 4.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5.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의 학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6. 수강신청한 과목을 이수치 않으면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된다.
- 7. 수강신청 상한선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8. 초과 신청한 학점은 낙제과목, 교양선택, 전공선택 및 기타과목 순으로 교무입학처의 판단에 의해 취소한다.
- 9.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0. (삭제 2001.3.1)
- 11. 재입학 및 편입학(일반, 군위탁, 학사) 학생의 경우 입학 후 첫학기에 한하여 최대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12.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는 한국학 강좌를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3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 13. 인턴쉽 교육과정 참여자의 수강신청, 변경, 취소, 학점취득 및 성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6. 9. 26)

제 4 조(주·야간 수강교류) ①교류수강신청은 9학점 이내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허용하되, 특별한 사유로 9학점 이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교무입학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전공·교직과정·부전공의 교직과목은 주·야간 수강교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주·야간에 함께 설치된 학과(부)의 학생이 특별한 사유로 전과목 수강을 희망할 경우, 수강 희망원을 작성하여 양 학과(부)장과 학장을 경유,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5 조(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①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폐강 및 분반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을 허락할 수 있다.

②수강신청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개강 후 소정의

취소기간 내에 수강신청 취소를 허락할 수 있다.

④ 학기도중 일반 휴학자(중간고사 전에 군입대 휴학자 포함)의 수강신청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제 6 조(제2외국어 수강) ①삭 제(98. 8. 4)

②삭 제(98. 8. 4)

③삭 제(90. 5. 25)

④삭 제(96. 6. 1)

제 7 조(학점포기제) ①이미 취득한 'C' 학점 이하 과목의 성적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취득한 다음 학기부터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단, 'F' 학점 취소는 교육과정 변경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3. 9. 1)

②학부로 입학한 자는 전공배정 이전에 학점포기를 할 수 없다.(개정 2003. 9. 1)

③성적을 취소하더라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학사경고는 삭제되지 아니한다.

④교무입학처에서는 성적을 취소한 해당학기의 성적을 다시 계산하여 평점평균을 새로이 산출한다.

제 8 조(편입학생의 수강신청)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본 대학교에서 심사하여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요령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체플과목의 경우 2학년 1학기 편입생은 2학기를, 2학년 2학기 편입생은 1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 3학년 편입생은 전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9 조(전공선택 및 교양선택과목 개설) ①전공선택과목은 5명 이상 수강신청자가 있을 때 개설할 수 있다.

②교양선택과목은 수강신청자가 20명 이상이어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인턴쉽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제 10 조(폐강과목 처리) 수강신청 결과 전공선택 및 교양선택과목의 수강신청 학생수가 본 시행세칙 제 9조 제1,2항에 의거 미달될 경우, 교무입학처에서는 1주일 이내에 해당과목을 폐강조치하고 그 폐강과목을 해당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교육과정 구분 및 학점이수

제 11 조(구분) 교육과정은 전공(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교양필수, 교양선택), 일반선택(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교직)으로 구분된다.

제 12 조(학점배정) 학과(부)별 학점 배정표는 별표 1과 같다.

제 13 조(학점당 이수학점)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성적우수자로서 이전학기 성적의 평균이 4.20 이상인지는 3학점까지 초과이수 할 수 있다.

제 14 조(학년별 수료인정학점) 삭 제 (2007.9.1)

제 15 조(복학 및 재입학자의 학점이수) 휴학 또는 제적되기 이전은 그 당시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복학 또는 재입학한 후부터는 해당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케 한다. (개정 2006.2.6)

제 16 조(선택필수과목) ① 삭 제 (2001.3.1)

②삭 제 (2001.3.1)

③삭 제 (2001.3.1)

제 17 조(대체과목인정) 삭 제 (2006.2.6)

제 4 장 시험과 성적

제 18 조(시험) ①매학기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중간 및 학기말 시험을 실시한다.

②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정기시험 외에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 19 조(추가시험) 중간 또는 학기말 시험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 추가시험원을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교무입학처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시험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그 성적의 등급은 "B+"까지 인정한다.

제 20 조(시험 중 부정행위처벌 및 기타) ①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부정행위 과목만 "F"로 처리한다.

②부정행위로 무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학기 전과목을 "F"로 처리한다.

③정학처벌로 인하여 시험기간 중 시험을 보지 못하였거나 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에 미달되어 시험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해당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①학기도중 중간시험만을 마치고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입대된 자는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개강일로부터 군입대일 1주일 전까지의 강의시간수를 총 강의시간수로 하여 3/4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된다.

②중간고사 이전에 군입대 입영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입대일이 중간고사 이후와 기말고사 이전 사이에 해당되면 당해 학기 중간고사 응시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1. 학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중간고사를 필히 응시하여 학점을 인정받아야한다.
2. 학기를 인정받지 않고자 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이전에 군입대 휴학을 신청하여야하며, 수강신청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③1학년 2학기 중간시험만으로 성적을 인정받는 자는 군입대 휴학 전에 전공지방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성적의 정정)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고사 종료후 2주 이내에 학과(부) 게시판에 당해 학기 성적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소정기일내에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그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외에는 성적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 23 조(편입학생 학점인정) ①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교의 소속 학과(부)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부)의 심의를 거쳐 교무입학처에서 최종 인정한다.

1. 편입학생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가. 제2학년 1학기(2학기인정) : 총 35학점
 - 나. 제2학년 2학기(3학기인정) : 총 52학점
 - 다. 제3학년 1학기(4학기인정) : 총 70학점
 - 라. 제3학년 2학기(5학기인정) : 총 87학점
 - 마. 군위탁 편입 : 총 70학점
 - 바. 학사 편입 : 총 72학점

2. 전공학점은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6)

3. 해당 학과(부)의 심의 및 교무연구처의 인정을 받은 학점은 학적부에 “편입학00학점(교양 00학

점, 전공 00학점)인정”으로 기재한다.

4. 전공 인정학점은 인정된 과목과 학점수를 병기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5. 전공과목 학점인정은 동일 교과목에 한하며, 전적대학 교과목의 학점수가 본교 교과목의 학점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학점수는 본교 교과목 학점수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다.
6. 편입학생은 졸업시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평점평균을 산정하며, 인정된 전적대학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②편입학생은 해당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제2학년 1,2학기 편입학생은 2학년부터 개설되는 필수과목(전공, 교양, 계열기초)과 60학점(건축학전공 10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전공 인정학점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제3학년 1,2학기 편입학생은 3학년부터 개설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건축학전공 10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전공 인정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군위탁 편입학생은 3학년부터 개설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건축학전공 10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4. 학사 편입학생은 3학년부터 개설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건축학전공 10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전공 인정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5.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편입학생(전과생포함: 이하 전입생으로 약칭함)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규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한다. (신설 2007.3.1)

③삭 제 (98. 8. 4)

④편입학생은 전공변경(전과), 조기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 24 조(성적평가와 분류 및 기록표 제출) ①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하고 교과목별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실험실습 기타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의 방법으

로 평가한다. (개정 2005.4.26)

②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급	실 점	평점	등급	실 점	평점
A+	97~100	4.5	C+	77~79	2.5
A0	94~96	4.3	C0	74~76	2.3
A-	90~93	4.0	C-	70~73	2.0
B+	87~89	3.5	D+	67~69	1.5
B0	84~86	3.3	D0	64~66	1.3
B-	80~83	3.0	D-	60~63	1.0
			F	0~59	0.0 (낙제)

③채플은 출석에 의하여 성적을 산출하되 "P"와 "F"로 분류한다.

④특정 교과목의 경우 "P"와 "F"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P"와 "F"의 기준은 교과목별로 별도로 정한다.

⑤교과목별 담당교수는 성적을 기말고사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의 지정 기한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 25 조(평점평균 산출방법)

성적평점계(취득학점수 × 평점)
수강신청학점수

①매학기 성적 평점평균 산출방법은 성적평점계를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다. 다만, 졸업사정시 평점 평균 산출방법은 "C", "D" 및 "F"로 평가된 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학점수는 제외하고 산출한다.

②"P"와 "F"로 평가되는 과목은 평점평균 산정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학점수로는 인정한다.

제 26 조(출석 및 결석) ①학기말시험은 총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여야 해당 과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개설학과 학생 중 직장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응시할 수 있다.

②삭 제(89. 9. 1)

③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는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갖춰 소속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이 날인된 공결원을 수령하여야

한다. 공결 승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 관계 등 정부지시로 불가피하게 된 경우
2. 대학신문 편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기타 학교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예비역 및 민방위 교육훈련, 징집대상자의 신체검사 등 병역의무 관계로 불가피한 결석은 4분의 1선에서 특별 고려한다.

④개인결석은 공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개강일 이후에 등록금추가기간 내에 등록한 학생은 여하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등록 전일까지 결석으로 인정한다.

⑥채플은 총 강의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 26 조의 2(출석의 의무) 학생은 당해 학기에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매시간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에는 해당교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한다.

제 5 장 다전공, 부전공

제 27 조(신청자격) ①부전공 신청자격은 2학기이상 이수자로서 부전공을 희망하는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예·체능계 학과(부) 건축학전공을 제외한 모든 학과(부)에서 부전공이 가능하다. (개정 2003. 3. 1)
2. 부전공은 8학기째 수강신청 변경기간 동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교직과정은 설치학과에서의 부전공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6. 9. 26)

② 삭 제(89. 9. 1)

③ 복수전공 및 다전공 인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전공 실시로 인해 2000학년도부터 복수전공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다전공제 실시이전에 복수전공을 이수 중이던 학생은 복수전공을 계속하거나 다전공으로 전환하여 졸업할 수 있다.

④ 다전공 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전공은 전공이수 인정 학점수를 최소화하여 4년(건축학전공 5년) 내에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2. 모든 학생은 소속 학과(부)에서 반드시 제1전공을 이수하여야 제2,3전공을 할 수 있다.
3. 다전공은 2000년 2월 이후 졸업자부터 모든 학과(부)에서 가능하다.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에서의 다전공은 허락하지 않는다.(건축학부 내에서는 허용)
4. 다전공 인정은 연계전공을 포함하여 특정한 전공 교육과정을 36학점(법학부 48학점, 건축학전공 7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계 학과와 교직과정 설치된 전공(학과)에서 다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전공 모두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대상자는 사범계 학생과 비 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제한한다.
5.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부별로 편성된 학부 기초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다전공이 가능하다. 다만, 연계전공 이수자, 1998학년도 입학자와 2002년 8월 졸업자까지는 학부기초과목 이수 없이 다전공을 할 수 있다.
6. 동일교과목으로 제1전공과 제2전공에 동시에 인정되는 전공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제3전공 이수시에는 별도로 36학점(법학부 48학점, 건축학전공 7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7. 동일 학부 내의 다전공 신청은 2학기 이상 이수 자로서 이수(연계전공 포함)는 제한이 없으나 타 학부로의 다전공은 전공별 편제정원의 140%(사범대학생들은 150% 이내적용) 이내로 제한 한다. 다만, 전공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전공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의 다전공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3.9.1, 2006.9.26, 2007. 2. 6)
8. 타 학부로 다전공 시 면제과목과 인정과목을 설정하여 면제와 대체 인정을 할 수 있다.
9. 타 학부로의 제2전공 이수는 1인 1회에 한하며 2학년 1학기말부터 3학년 2학기말까지 학생종합정보시스템(휴학생의 경우 따로 정함)으로 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3전공 신청은 제2전공 이수중인 자로 2전공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제3전공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03.9.1, 2007.2.6)

10. 타 학부로 다전공을 신청할 시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제1기준 :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배정
- ㉡ 제2기준 : 특정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전공별 편제정원의 140%(사범대학생들은 150% 범위 적용) 상회할 경우에는 다음순위에 따라 배정(2003. 9. 1)

- ㉢ 1순위 : 전체 교과목 성적순
- ㉣ 2순위 : 학부 기초과목 성적순
- ㉤ 3순위 : 지방전공 교과목 성적순

11. 타학부로의 다전공을 원하는 학생이 다전공 승인을 받지 않고 다전공 인정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졸업시 다전공이 인정되지 않는다.(개정 2003. 9. 1)

제 28 조(부전공 표시인정)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과(부)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부전공을 인정하고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부전공 이수를 표기한다.

제 29 조(부전공학과 변경 및 취소) 부전공 학과(부)를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전공 취소는 2000학년도 제2학기까지 부전공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0 조(부전공 학점인정) ①이미 취득한 부전공과목 학점은 부전공학과(부)를 변경 및 취소하였을 경우 그 과목은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는 일반선택으로 표기한다.

②부전공신청 전에 취득한 과목이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해당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될 때는 부전공 과목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삭 제 (98. 8. 4)

제 6 장 학사경고 및 제적

제 31 조(학사경고) ①학기당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교무입학처에서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이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1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도록 교무업무처에서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제 32 조(제적) 삭 제

제 7 장 삭 제

제 33 조 삭 제(89. 9. 1)

제 34 조 ① 삭 제(89. 9. 1)

② 삭 제(89. 9. 1)

③ 삭 제(89. 9. 1)

제 35 조 삭 제(89. 9. 1)

제 35 조의 2 삭 제(90. 9. 1)

제 8 장 삭 제

제 36 조 ① 삭 제(89.9.1)

② 삭 제(89.9.1)

제 37 조 삭 제

제 38 조 삭 제

제 9 장 전공배정, 전 과 (부)

제 39 조(전공배정) ①학칙 제19조에 의한 전공배정은 1학년 2학기말에 소속 학부의 전공배정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다만, 전공배정 인원 상한선은 전공배정 대상자 수를 편제정원 비율로 계산한 인원의 120% 이내로 한다.

②전공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준 :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한다.
2. 제2기준 : 1학년 2개 학기의 취득학점이 33학점 이상인 자를 우선 배정한다.
3. 제3기준 : 특정 전공 희망자가 전공배정 인원 상한선을 상회할 경우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 가. 1순위 : 전체교과목 성적순
 - 나. 2순위 : 학부 기초과목 성적순
 - 다. 3순위 : 지망전공 교과목 성적순

③전공예외배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희망전공 미 제출자의 전공배정은 학부에서 따로 정한다.
2. 외국인 특례입학자와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는 희망전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3. 전공예약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해당전공으로 우선 배정한다.

제 39 조의 2(전공변경(전과)) ①학칙 제19조의 2에 의한 전공변경(전과)을 희망하는 자가 3학기이상 등록금을 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소속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공변경(전과)할 수 있다. 다만, 전과(부) 허가 시점의 재학생 수가 전공배정 당시의 전공배정인원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재학생은 복학기간까지의 복학생을 포함한 인원으로 한다. (2007.3.1)

②모집단위가 학과인 경우에는 학과별 편제정원의 120% 범위 내에서 전공변경(전과)을 허용한다. 다만, 비사범계 학생의 사범대학 학과로의 전공변경(전과), 편입생과 특기자 입학생의 전공 변경(전과)는 불허하나 대학학생정원령에 의거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이 전공변경(전과)할 때는 예외로 한다.(2007. 3. 1)

③야간 학과(부) 입학자의 주간 학과(부)로의 전공변경(전과) 여석은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서 모집단위별 제적생수와 입학시 미충원 인원을 모집단위별 제적생수와 입학시 미충원 인원으로 하되, 재적생(휴학생 포함)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한다.

④전공변경(전과)의 신청인원이 선발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전체 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⑤전공변경(전과)한 자의 교과목 이수능 전입학과(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 하여야한다.

⑥(2000.1. 삭제)

⑦전공변경(전과)희망자가 허가 예정인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성적순위로 허가하되, 별도의 시험과 면접을 부과할 수 있다. (2007.3.1)

⑧외국인 특례입학자의 전공변경(전과)은 위의 항들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예외로 전공변경(전과)할 수 있다.

제10장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 제 40 조(휴학) ①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의 휴학원에 종합병원 발행의 진단서 또는 휴학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휴학기간은 재학 중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적된다. 다만,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병사유인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2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일반(가사)휴학원 제출시기는 매학기 등록기한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학기가 개시된 후 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10)
- ⑤일반휴학기간 중 영장이 발급되어 군입대할 경우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군입대휴학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⑥1학년 학생은 군입대, 질병사유 및 직장관계(야간강좌)이외는 휴학을 불허한다. (개정 2007.9.1)
- ⑦1학년 2학기를 수료한 자가 휴학을 할 경우에는 전 공지방원서를 소속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 영장을 받고 "입대휴학"을 함에 있어, 입대일이 일반휴학 당해학기말(기말고사 종료일)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입대휴학기간"으로 산정하지만, 입대일이 일반휴학 당해 학기말(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일반휴학기간"으로 산정한다.
- 제 41 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와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학기 초 등록마감 이전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학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적된다.
- 제 42 조(자퇴) ①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연서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학칙 제2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 제 43 조(재입학) ①학칙 제18조에 따른 재입학은 해당

학과(부) 재적생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적당시 이하의 학년에 허락할 수 있다.

- ②재입학은 제적하였던 전공(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2회에 한하여 재입학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입학 지원이 가능하다.
- ③ 삭 제(89. 9. 4)
- ④재입학 지원자는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한 내에 재입학허가원(소정양식),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증명서)을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교무입학처에 재입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교무입학처장은 "재입학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입학 지원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하고 총장의 재가를 득한 후 허가 통지한다.
- ⑥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한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재입학금 포함)을 필하는 등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⑦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이전에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며, 해당학과(부) 및 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잔여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 ⑧재입학자는 학칙 및 시행세칙 등 관련규정 및 학생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장 특별학점인정

- 제 44 조(응시자격) ①1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시험과목은 해당 교육과정상의 교양필수과목 중 교무입학처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5 조(정의) ①학점취득 특별시험은 신입생이 입학 전에 학교에서 시행하는 특별시험을 거쳐 해당 교육과정상 1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교양필수과목을 미리 인정받는 제도로서 희망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특별학점 인정은 본교 재학 중 자격증 및 외부시험으로 인정받은 성적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로서 그 범위는 교육과정 편성 시에 정한다.
- 제 46 조(공고) ①학점취득 특별시험은 신입생 합격자

발표 시 안내문을 배부하며, 시험은 1학기 수강신청 전의 소정기일 내에 실시한다.

②특별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강 2주차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격증(성적표) 사본, 본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부(과)에 신청한다.

제 47 조(학점인정) ①학점취득 특별시험의 합격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합격한 교과목의 학점은 해당학점으로 하며, 그 교과목을 특별 학점취득으로 인정하고 그 성적을 "A0"로 한다.

③특별학점 인정과목 및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과정 편성표에 따른다.

④학점취득 특별시험과 특별학점 인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공배정 취득학점에서 제외한다.

제 12 장 계절학기

제 48 조(수강자격) 계절학기에서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성적이 우수하거나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휴학 중에 있는 자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다.

제 49 조(수강학점) ①매 계절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9 학점 이내이며, 수업시간은 4주이상으로 한다.

②과목개설은 1과목당 교양과목은 20명 이상, 전공과목은 개설 전공(학과) 학년 편제정원의 25%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수강신청자가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턴십 교육과정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6. 9. 26)

제 50 조(출석등) ①계절학기에도 정규학과와 같이 총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②수강료는 학점단위로 징수한다.

③계절학기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전공배정 취득학점에서 제외한다.

④계절학기 취득학점은 당해학년, 학기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 학기로 처리 한다. 또한 취득학점은 최종 졸업 사정시에만 인정한다.

⑤취득학점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⑥졸업학점 부족으로 계절학기를 수강한 경우 계절

학기에서 취득한 학점(학점교류대학포함)으로 당해 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

제 13 장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포함)

제 51 조(졸업논문적용) ①졸업논문은 전학과에 적용한다. 다만,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작품발표로 대신 할 수 있다.

②졸업종합시험 및 실기발표에 의한 논문작성 대체 인정 여부는 매년 논문작성 계획서 제출 공고시에 확정 발표한다.

③졸업논문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실시 전 학년도에 변경 사유를 해당 대학장을 경유,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2 조(논문작성 제출자격) ①졸업논문 작성계획서(실기발표계획서, 졸업종합시험신청서)는 4년제는 6학기를 이수(108학점 이상 취득)하고 7학기에 재학 중인 자, 5년제는 8학기를 이수(144학점 이상 취득)하고 9학기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단, 4년제의 경우 6학기 이수자 중 100학점, 5년제의 경우 8학기 이수자 중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시기의 졸업학점 취득 가능성을 심사하여 논문작성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조기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개정 2003.3.1, 2007.2.6)

②논문작성 제출자격을 얻은 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다음 각 호 1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학과(부)별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작성의 진과정을 지도 받아야 한다. 논문은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 성격에 따라서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각 연구자는 연구분야의 중복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 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학기 3월 15일(전기졸업예정자) 및 9월 15일(후기졸업예정자)까지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작성의 방법, 규격, 양식 등은 소속학과(부)에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 53 조(논문제출시기) 완성된 논문은 최종 졸업학기를

기준으로 5월 30일(후기졸업자) 및 11월 30일(전기 졸업자)까지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54 조(지도교수 선정) ①제출된 논문작성 계획서에 의하여 학과(부)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해당학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 제(1998. 8. 4)

제 55 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졸업논문 심사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학과(부)장이 2 인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학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논문지도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 56 조(논문심사) ①제출된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판정하며, 경우에 따라 논문심사를 학과(부)회의에 부의할 수도 있다.

②논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심사위원이 평가한 성적의 평균치로 계산한다.

제 57 조(종합시험자격) 본 세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58 조(종합시험과목) ①종합시험의 과목(혹은 영역)은 해당학과(부) 교수회의에서 결정 공고한다.

②종합시험은 소속학장이 관리한다.

제 59 조(종합시험 출제) ①출제위원은 학과(부)장이 추천하여 소속학장이 위촉한다.

②시험은 매과목 혹은 영역별 60분으로 하고, 과목당 2인 이상이 출제하되 출제위원당 100점 만점으로 출제한다.

③합격기준은 매과목 혹은 영역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을 종합 합격으로 한다. 과목당 합격은 60점 이상으로 하고 59점 이하를 과목낙제로 한다.

제 60 조(종합시험 시기) ①본 시험은 5월(후기졸업) 및 9월(전기졸업)에 실시한다.

②재시험자가 있을 경우 6월(후기졸업) 및 11월(전기졸업)에 실시할 수 있다.

③학과(부)장이 시험과목 및 구체적인 사항을 시험 2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④성적은 시험종료 2주일 이내 발표할 수 있다.

제 61 조(졸업작품 자격) 본 세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다.

제 62 조(졸업작품 제출) 졸업작품은 본인이 선택한 전공실기와 동일한 과목의 작품 2 점을 5월말(후기졸업)과 10월말(전기졸업)에 해당학과(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63 조(졸업작품 규격) 전공별 졸업작품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동양화, 서양화 : 200호 이내

2. 조 소 : 높이 3m 이내

3. 판 화 : 캔트지 전지 이내

4. 서 예 : 높이 3m 이내

5. 사 진 : 전지 이내

6. 공 예 : 100, 200, 300cm

제 64 조(졸업작품지도교수) ①학과(부)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전공별 담당교수를 선정 하여 해당학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장은 지도교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그 명단을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5 조(졸업작품심사 및 작품전) ①졸업작품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 해당학과 (부)의 전임교수 전원이 분야별로 심사한다.

②작품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성적의 평균치로 계산한다.

③작품전에는 심사에 합격된 작품만 전시한다. 다만, 후기졸업자의 작품은 다음 학년도 졸업예정자와 같이 전시한다.

제 66 조(성적제출) ①평가한 성적은 졸업사정 1개월 전까지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된 성적은 학적부의 A, B, C, F 등급으로 기재한다.

제 67 조(재심사)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졸업논문심사(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논문 재 제출, 작품 재 제출, 종합시험 차기 심사기간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요청 가능기간은 최초 졸업심사 후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① 삭 제(89. 9. 1)

② 삭 제(89. 9. 1)

③ 삭 제(98. 8. 4)

제 68 조(공고) 졸업논문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공고를 통해서 고지한다.

제 14 장 졸업

제 69 조(졸업자격) 졸업사정에 합격하여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의 등록(8학기 성적취득)을 필하고 140학점(건축학전공 165학점, 인문사회계열 2006입학자부터 136학점, 단, 사범대학은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그 성적의 전체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6. 9. 26)
2. 학과(부)별 교육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교양 과목(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과목(부전공, 교직, 다전공) 별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요건은 따로정한 다. (개정 2007.3.1)
3. 삭 제(96. 6. 1)
4. 졸업논문심사(졸업종합시험, 작품발표 포함)에 합격한 자.
5. 삭 제(89. 9. 1)
6. 체플을 4학기 이수(P)한 자
7. 한남사회봉사인증 72시간을 이수한 자 (개정 2005.4.26)

제 69 조의 2(조기졸업) ①학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로서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자는 6학기(건축학전공 8학기) 이상 수료후 조기졸업 시킬 수 있다.

②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4 주 이내에 소정의 “조기졸업 신청서”를 학과(부)장, 학장을 거쳐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9 조의 3(국내외 대학과의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다른 대학 학생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 한한다. 다만,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외국 정규대학의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학할 수 있다.

②수학허가 인원은 당해 학과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해당 대학장이 정한다.

③다른 대학의 장은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명단을 수강신청 개시일 1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 후 당해 다른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수학이 허가된 학생의 납입금은 학술교류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수는 학술교류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국내외 다른 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술교류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또는 이에 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7.9.1)

제 70 조(정원 외 졸업) 입학정원 외의 졸업대상은 학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71 조(졸업시기) 졸업시기는 매년 전기, 후기로 한다.

제 15 장 제증명 발급

제 72 조(발급처) 재학, 재적, 졸업예정 등 학사관계 증명서 및 학생증 등 학생신상 문제에 따른 각종 증명서는 학적관리팀에서 발급한다.

제 73 조(신청원) (삭제 2006. 9. 26)

제 16 장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제 74 조(변경절차 등) ①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변경사유가 기재된 호적등(초)본 2통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학적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26)

1. 성명 정정
2. 생년월일 정정
3. 삭 제(89. 9. 1)

②정정원 제출은 4학년(건축학전공 5학년) 1학기 이전에 학적관리팀에 신고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불이행할 시는 정정할 수 없다.(개정 2006. 9. 26)

부 칙

이 세칙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 34, 35, 37, 38조는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제6조 제3항은 198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8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사항) 이 변경세칙 중 제35조의 2는 1988년 2월 졸업자까지만 인정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변경세칙 중 제2조 제2항 제3,6호는 90년 2학기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항2호 중 단서 추가(채플 제외), 제8조 단서 추가, 제23조 전체 내용변경, 제69조 중 제6호 신설)
②(경과조치) 이 변경세칙 중 제23조는 1996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변경세칙 중 제11조와 제12조는 199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23조는 1996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12호 한국학 강좌 근거 신설, 제58조 제1항의 학과별 종합시험과목을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토록 변경, 제60조 제3항에서 종합시험과목공고를 2개월 이전에 학과장 공고토록 수정함)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199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199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전공배정 결과는 이 변

경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본 변경세칙중 제2조 제7항, 제27조 제3항은 200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되, 1999학년도 2학기 까지 다전공을 신청하여 이수중인 자에게는 소급하지 않는다.
- 2. 제39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은 2000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의 전과(부)시기는 변경전 학칙(제2,3학년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학기초에 전과 [부] 신청)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변경세칙 중 제27조 제4항 제9호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01학년도 1학기부터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에게는 소급하지 않는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세칙 변경 당시의 생물학과, 생물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과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14조, 23조, 제69조는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변경 전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는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 [별표1]의 사범대학 부전공 이수학점 배정표는 2001학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9조 7호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

(2007학년도 교육과정)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양과목						졸업최저 이수학점
		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교 직	
문과 대학	국어국문학과	9	51	60	13	0	13	-	(21)	(20)	136
	문예창작학과	9	51	60	13	6	19	-	(21)	-	136
	문헌정보학과	15	45	60	13	0	13	-	(21)	(20)	136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4	46	60	13	0	13	-	(21)	(20)	136
	아동영어학전공	16	44	60	13	0	13	-	(21)	(20)	136
	일어일본학과	15	45	60	13	0	13	-	(21)	(20)	136
	유럽어문학부										
	프랑스어문학전공	15	45	60	13	8	21	-	(21)	(20)	136
	독일어문학전공	15	45	60	13	8	21	-	(21)	-	136
	사학과	12	48	60	13	0	13	-	(21)	-	136
철학과	14	46	60	13	0	13	-	(21)	(20)	136	
기독교학과	12	48	60	13	0	13	-	(21)	(20)	136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12	48	60	13	2	15	-	(30)	(20)	140
	영어교육과	13	47	60	13	2	15	-	(30)	(20)	140
	교육학과	15	45	60	13	2	15	-	(30)	(6)	140
	역사교육과	0	60	60	13	2	15	-	(30)	(20)	140
	미술교육과	14	46	60	13	2	15	-	-	(20)	140
	수학교육과	15	45	60	13	2	15	-	-	(20)	140
이과 대학	수학과	12	48	60	13	18	31	-	(21)	(20)	140
	광·전자물리학과	15	45	60	13	24	37	-	(21)	(20)	140
	의류학과	15	45	60	13	0	13	-	(21)	(20)	140
	생활체육학과	14	46	60	13	0	13	-	-	-	140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과	15	45	60	13	30	43	-	(21)	(20)	140
	전자공학과	12	48	60	13	30	43	-	(21)	(20)	140
	정보통신공학과	15	45	60	13	30	43	-	(21)	(20)	140
	멀티미디어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12	48	60	13	18	31	-	(21)	(20)	140
	미디어영상전공	12	48	60	13	18	31	-	-	-	140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15	45	60	13	30	43	-	(21)	-	140
	건축학전공	15	93	108	13	30	43	-	-	-	165
	토목환경공학과	15	45	60	13	30	43	-	(21)	-	140
산업경영공학과	15	45	60	13	30	43	-	(21)	-	140	
기계공학과	16	44	60	13	24	37	-	(21)	(20)	140	
경상 대학	경영학과	0	60	60	13	18	31	-	(21)	(20)	136
	회계학과	15	45	60	13	15	28	-	(21)	(20)	136
	무역학과	15	45	60	13	15	28	-	(21)	(20)	136
	경영정보학과	15	45	60	13	15	28	-	(21)	(20)	136
	창업전공(연계전공)	3	33	36	-	-	-	-	-	-	
	중국통상·경제학부										
	중국통상전공	6	54	60	13	18	31	-	(21)	-	136
	경제전공	6	54	60	13	18	31	-	(21)	(20)	136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졸업최저 이수학점
		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교 직	
경상 대학	정보통계학과	15	45	60	13	15	28	-	(21)	-	136
	하이테크비즈니스전공(연계전공)	6	30	36	-	-	-	-	-	-	
	컨벤션산업학과	15	45	60	13	15	28	-	-	-	136
법과 대학	법학부										
	법학전공	15	45	60	13	15	28	-	(21)	-	136
	특허법학전공	13	47	60	13	15	28	-	(21)	-	136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15	45	60	13	12	25	-	(21)	(20)	136
	정치언론·국제학과	12	48	60	13	12	25	-	(21)	-	136
	도시부동산학과	15	45	60	13	12	25	-	(21)	-	136
	광고·홍보학전공(연계전공)	6	30	36	-	-	-	-	-	-	
	경찰행정학과	9	51	60	13	12	25	-	(21)	-	136
	사회복지학과	12	48	60	13	0	13	-	(21)	-	136
	아동복지학과	15	45	60	13	0	13	-	(21)	(20)	136
미술 대학	디자인학과	13	47	60	13	8	21	-	-	(20)	140
	회화과	15	45	60	13	8	21	-	-	-	140
	예술문화학과	14	46	60	13	8	21	-	-	-	140
립튼 글로벌 칼리지	글로벌학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아트전공	15	45	60	13	17	30	-	(21)	-	136
생명 나노 과학 대학	생명과학과	15	45	60	13	18	31	-	(21)	(20)	140
	식품영양학과	15	45	60	13	6	19	-	(21)	(20)	140
	생명나노과학부										
	생명공학전공	8	52	60	13	24	37	-	(21)	-	140
	화학전공	15	45	60	13	24	37	-	(21)	(20)	140
	나노생명화학공학	15	45	60	13	24	37	-	(21)	-	140
	신소재공학	14	46	60	13	24	37	-	(21)	(20)	140

※ 졸업이수 주의사항

- 1) 채플은 Pass 과목이므로 졸업시까지 4학기 "P" 를 인정받아야 함.
- 2) 다전공시 전공을 각각 36학점(사범계 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자 42학점, 법학부 4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 3) 연계전공은 계열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제2전공부터 36학점이상 이수함.
- 4) 본 배정표는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해당 배정표를 적용 받음.
- 5) 사범대학에서의 부전공 최저이수학점은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적용됨.
- 6) 사범대학 부전공의 이수학점 배정표는 2001학년부터 적용한다.
- 7) 교양선택과목 이수원칙 :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7개영역 중 5개영역에서 15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함. 단 사범대학은 3개영역에서 9학점이상을 이수해야함(2002~2005학년도 입학생은 2006학년도 입학생적용 교양선택과목 7개영역 중 3개영역에서 9학점이상을 이수해야함)
- 8) 한남사회봉사 졸업인증제 :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 전까지 한남사회봉사단에서 운영되는 사회봉사활동에 7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등록에 관한 규정

1984. 3. 1 제정	1999. 3. 1 개정
1999. 8. 1 제정	2000. 8. 1 개정
2005. 2. 4 개정	2007. 9. 1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납부방법) ①등록금은 매학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그 보호자 연서로 등록금 납부연기 신청을 한 때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의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기일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②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다음해 이후에 휴학한 당기와 동일한 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그 복학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등록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업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경과되기 이전에 휴학한 자는 등록금액이 휴학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2. 수업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가 4분의 1이 경과된 이후에 휴학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징수한다.

제 3 조(학점등록)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학부 (개정 2007.9.1)
 - 가. 3학점 이하일 때는 등록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나. 4학점 이상 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다. 7학점 이상 9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라.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2. 대학원
 - 가.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나. 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다. 7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3.기 타

계절학과와 시간제 등록(수강료) 및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학점등록을 인정하여 학점단위로 징수한다. 단, 학점당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5. 2. 4)

제 4 조(납부기일) 등록금의 납부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학기의 개시 전 1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학년 입학당시의 등록금 납부기일은 예외로 한다.

제 5 조(등록금 등의 반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일 경우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을 반환한다.

③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학기 개시일 30일 전까지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나머지등록금의 5/6해당액을 반환한다.(개정 2005.2.4)
2. 당해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까지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등록금의 2/3 해당액을 반환한다.(개정 2005. 2.4)
3. 당해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까지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등록금의 1/2해당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5.2.4, 2007.9.1)
4.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2.4)

제 6 조(징벌) ①총장은 등록금 납부를 그 학기수업일수의 4분의 1이 경과한 때까지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퇴학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입학금의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 조(과태료 등) ① 등록금의 체납에 대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6조 또는 학칙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 및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2. 10. 1 제정 1999. 4. 1 전면 개정
2001. 3. 1 전면개정 2002. 3. 1 개정
2006. 9. 1 개정 2007. 2. 6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전공(학과)의 학생이 졸업 후 2급 정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 26)

제 2 조(이수신청 및 선발)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년도별 2학년 1학기말에 “교직과정이수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격은 전체학기 평균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30 이상인 자로 한다.(후단 개정 2002. 3. 1)

②편입학자는 교직과정 이수신청은 별도로 한다.(개정 2006. 9. 26)

③교직과정 이수자의 선발은 2학년 2학기 수강신청 전에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해당 전공(학과)으로 통보한다. 다만, 교직과정 이수자는 입학정원의 10%(단, 문헌정보, 철학, 기독교, 디자인, 식품영양,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기계공학, 아동복지 30%)범위 내에서 선발한다.(개정 2006. 9. 26)

제 3 조(선발기준) 교직과정 이수자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순위 : 전체 평점평균
2. 2순위 : 전공성적
3. 3순위 : 면접, 인·적성검사(신설 2002. 3. 1)

제 4 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수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2. 3. 1)

1.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된 자(신설 2002. 3. 1)
2. 교직과정 이수자중 전과(전공 변경)한 자(신설 2002. 3. 1)
3. 교직과정 이수자중 제적된 자(신설 2002. 3. 1)

제 5 조(과목이수) ①교직과정 이수자는 [별표3]의 소요최저이수학점에 해당하는 필수과목 총 2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직과정 이수자는 기본이수영역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이수영역은 1999학

교직과정이수관련규정

년도까지는 9학점 이상, 2000학년도부터는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전공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직과목 중 “교육 행정및교육경영”과 “교과교육론”을 8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이수하여도 교직과목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제 6 조(성적) ①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각각 80점(소수점 이하 버림) 이상이어야 하며, 사범대학 입학자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다전공 및 부전공시에도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3. 1, 2006. 9. 26)

②평균성적 환산방법은 성적계(취득학점수 ×100만점으로 평가된 실적)를 수강신청학점계로 나눈다. 다만, 졸업사정시 “F”로 평가된 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학점수를 수강 신청 학점계에서 제외하여 산출한다.

제 7 조(무시험검정원서)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졸업예정자는 소정기일 내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이하 검정원서라 한다)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개정 2002. 3. 1)
2.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자
3. 교직 및 전공성적이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4.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②검정원서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하며, 오기로 인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이 취소될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 8 조(다전공 및 부전공) ①다전공으로의 교직이수는 1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후 다전공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1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으면 1전공 및 다(부)전공으로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③다(부)전공 이수는 사범대학과 비 사범계 전공(학과)

중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서만 가능하다.

1. 다전공은 전공과목(제1전공 및 제2전공)을 42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4학점을 전공별로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1)

2. 부전공은 제1전공을 60학점 이상, 부전공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4학점은 전공별로 각각 이수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은 사범대의 경우 2001학년부터, 교직설치학과의 경우 2002학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목의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2. 3. 1, 신설 가, 나, 다 호)

가. 교직설치 학과 : 2001학년도 이전 교직 선발자는 부전공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나. 사범대 : 2000학번 및 복학자의 경우 3학년 복학자까지는 부전공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다. 편입생 : 2001학년도 편입생까지는 부전공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3.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000학년도 이수 입학자의 경우 14학점,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9학점으로 한다.

④학교급별이 다른 전공간의 부전공은 불가능하다.

⑤다전공시 교원자격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범대학 졸업자 : 정교사 2급 제1호
2. 비 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정교사 2급 제5호
3. 교직과정 이수자의 사범계 다전공 : 정교사 2급 제5호
4. 사범계 학생이 비 사범계 다전공 : 정교사 2급 제5호 (개정 2006. 9. 26)
5. 아동복지학전공 교직과정 이수자 : 유치원 2급 정교사 제2호 (신설 2002. 3. 1)
6.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 사서교사 제1호 (신설 2002. 3. 1)
7. 식품영양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 영양교사 2급 (신설 206. 9. 26)

⑥다전공 및 부전공의 교과목 이수는 (별표 4) 와 같다.

⑦다전공 및 부전공의 선발인원은 입학정원기준으로 하고, 2006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자, 2005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자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적

용한다. (신설 2006. 9. 26)

1. 사범계 학과 : 입학정원의 50%이내
2. 교직과정 설치학과 : 입학정원의 10%이내

제 8 조의 1(다전공 및 부전공 신청자격) 다전공 및 부전공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7.2.6)

- ① 사범계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이수선발자 중 3학기를 이수한 자로 한다.
- ② 복학생의 경우 2학기를 이수하고 2학년 1학기에 복학한자는 당해연도의 2학년 학생들과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2학년 2학기에 복학하는 자는 2학년 2학기말 여석이 있는 범위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 2(다전공 및 부전공 신청시기, 선발시기) 다전공 및 부전공의 신청시기 및 선발시기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7.2.6)

- ① 다전공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며 2학년 1학기말부터 2학년 2학기말까지 신청한다. 단, 2학년 2학기말에는 여석이 있는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전공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기준: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배정
2. 제2기준: 특정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사범계학과는 입학정원의 50%,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의 10%를 상회할 경우에는 다음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 ㉠ 1순위: 전체 교과목 성적순
- ㉡ 2순위: 학부 기초과목 성적순
- ㉢ 3순위: 지방전공 교과목 성적순

③ 3전공 신청자는 2학년 2학기말 여석이 있는 학과에 신청 가능하다.

④ 부전공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며 2학년 2학기초에 신청한다.

⑤ 부전공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기준: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배정
2. 제2기준: 특정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사범계학과는 입학정원의 50%,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의 10%를 상회할 경우에는 다음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 ㉠ 1순위: 전체 교과목 성적순
- ㉡ 2순위: 학부 기초과목 성적순
- ㉢ 3순위: 지방전공 교과목 성적순

제 9 조(교육실습) ① 교육실습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중 4학년(6학기 이상 이수) 진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 부담으로 한다.

③ "교육실습신청원"은 사범대학으로 제출한다.

제 10 조(연계전공) ① 교직연계전공은 표시과목별로 아래의 해당 전공(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만이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02. 3. 1)

1. 공통사회 : 역사교육과, 경제전공, 행정학과 (개정 2006. 9. 26)
2. 공통과학 : 광·전자물리학과, 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개정 2006. 9. 26)
3. 도덕·윤리 : 교육학과, 철학과(개정 2006. 9. 26)

② 교직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연계전공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는 1전공, 연계전공, 교직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교직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전공 42학점, 연계전공 42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26)

④ 해당 전공(학과)별 중복인정 학점은 15학점 내에서 가능하며, 전공(학과)별 중복인정과목은 따로 정한다.

제 11 조(교직과정운영위원회)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2. 3. 1)

제 12 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교무연구처장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각 대학에서 1인(단 사범대학은 학장), 학사관리팀장, 교육학과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으로 한다. (신설 2002. 3. 1)

제 13 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2. 3. 1)

1. 교직과정 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련 대학 및 학과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실습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
되, 도서관학과 및 제6조, 제7조 제2,3항, 제8조, 제9
조 제1,2항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전면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전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
되 제2조 제1항중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 교직과
정이수신청원”을 제출한 후 학적변동으로 변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학 연도별로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부 칙

- ①(시행일)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중 제8조 제3항의 제2호, [별
표4]는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학년도 이
전 입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직과정 이수표**

['81학년도 이전 입학생 적용]

영역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역사·철학·사회	· 학교와 지역사회(필수) · 교육원리, 발달심리, 중등교육론 등(선택)	4학점 이상	12학점 이수
심리학	· 교육심리, 발달심리 등(선택)	2학점 이상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평가(선택)	2학점 이상	
과목지도법	· 각과목(필수)	2학점	
교육실습	· 각과목(필수)	2학점(4주)	

※ 사서교사 교직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실습 대신에 실무실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교직과정 이수표

(별표2)

['82, '83학년도 입학생 적용]

영역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역사·철학·사회	·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원리, 교육사, 중등교육론, 교사론 및 유아교육개론 등(선택)	6학점 이상	16학점 이수
심리학	· 교육심리, 발달심리(선택)	2학점 이상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평가, 유아교육과정(선택)	4학점 이상	
과목지도법	· 각 과목(필수)	2학점	
교육실습	· 각 과목(필수)	2학점(4주)	

※ 사서교사 교직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실습 대신에 실무실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교직과정이수표

(별표3)

[’84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영역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교육이론	· 교육학개론(2) · 교육사회(2) · 교육철학 및 교육사(2) · 교육심리(2)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	14학점(7개과목전부)	20학점 이수		
	교과교육			· 교과교육론(2)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2)	4학점(2개과목 전부)
	교육실습			· 교육실습(2)	2학점(4주)

(별표4)

다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 이수표

전공	전공이수학점	교직과목 이수	교육실습	기본이수영역	발급기준
1전공	전공 60학점	전 과목(20학점)	필히 이수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 전공, 교직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다전공	1전공 42학점	전 과목(20학점)	필히 이수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 1전공, 다전공, 교직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다전공 42학점	교과교육영역 4학점	아동복지, 문헌정보, 식품영양만 별도 이수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부전공	1전공 60학점	전 과목(20학점)	필히 이수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 아동복지, 예·체능계, 문헌정보, 식품영양 부전공 불가
	부전공 30학점	교과교육영역 4학점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 1전공, 부전공, 교직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 전공이수학점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부전공의 부전공 전공이수학점은 이 규정 제8조에 따른다.
- 기본이수영역은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5)

학과(전공)별 다전공 / 부전공 선발인원 현황표
(2005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학과	입학정원	승인인원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정원	승인인원	선발인원		비고
			다전공	부전공					다전공	부전공	
국어국문학과	40	4	4	4		전자공학과	65	18	6	6	
영어영문학전공	80	8	8	8		정보통신공학과	65	18	6	6	
일어일문학과	40	4	4	4		기계공학과	60	18	6	6	
프랑스어문학전공	40	4	4	4		경영학과	100	10	10	10	
문헌정보학과	40	12	4	4		회계학과	100	10	10	10	
철학과	40	12	4	4		무역학과	40	4	4	4	
기독교학과	40	12	4	4		경영정보학과	40	3	3	3	
디자인학과	60	18	6	6		경제전공	50	4	4	4	
국어교육과	40	40	20	20		행정학과	40	4	4	4	
영어교육과	40	40	20	20		아동복지학전공	40	12	4	4	
교육학과	40	40	20	20		생명과학전공	50	4	4	4	
역사교육과	40	40	20	20		화학전공	60	6	6	6	
미술교육과	30	30	15	15		식품영양학전공	50	15	5	5	
수학과	60	6	6	6		신소재공학전공	50	5	5	5	
광·전자물리학과	60	6	6	6		아동영어학전공(야)	40	4	4	4	
의류학과	40	4	4	4		경영학과(야)	50	5	5	5	
컴퓨터공학과	80	8	8	8		회계학과(야)	40	4	4	4	
멀티미디어공학전공	90	9	9	9		무역학과(야)	40	4	4	4	

▪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2006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선발인원		비고
			다 전공	부 전공					다 전공	부 전공	
국어국문학과	40	4	4	4		전자공학과	60	12	6	6	
영어영문학전공	90	9	9	9		정보통신공학과	60	12	6	6	
일어일문학과	40	4	4	4		기계공학과	60	18	6	6	
프랑스어문학전공	40	4	4	4		경영학과	110	11	11	11	
문헌정보학과	40	12	4	4		회계학과	100	10	10	10	
철학과	40	12	4	4		무역학과	60	6	6	6	
기독교학과	40	12	4	4		경영정보학과	50	5	5	5	
디자인학과	60	18	6	6		경제전공	70	7	7	7	
국어교육과	40	40	20	20		행정학과	70	7	7	7	
영어교육과	40	40	20	20		아동복지학전공	40	12	4	4	
교육학과	40	40	20	20		생명과학전공	50	4	4	4	
역사교육과	40	40	20	20		화학전공	60	6	6	6	
미술교육과	30	30	15	15		식품영양학전공	50	15	5	5	
수학과	60	6	6	6		신소재공학전공	50	5	5	5	
광·전자물리학과	50	5	5	5		아동영어학전공(야)	30	3	3	3	
의류학과	40	4	4	4		경영학과(야)	30	3	3	3	
컴퓨터공학과	70	7	7	7		회계학과(야)	0	0	0	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5	5	5		무역학과(야)	0	0	0	0	
미디어영상전공	45	5	5	5							

▪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에관한규정

1998. 3. 1 제정	1998. 9. 1 개정
1999. 3. 1 개정	2001. 3. 1 개정
2006. 3.2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남대학교 학칙 제19장 제76조에 의한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전형 및 등록

제 2 조(등록정원) 시간제학생의 등록정원은 당해 년도 입학정원의 10%이하로 한다. 다만, 당해 년도 학과(부)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조(수업학기) 수업기한은 학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기는 제1학기, 제2학기 및 계절학기로 구분하고 매 학기 전형을 거쳐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제 4 조(등록시기)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 일전의 소정 기일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등록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5 조(등록자격)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6 조(지원절차) ①본 대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원서와 전형료를 다음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이미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

지 아니한다.

③계속지원의 경우에는 전형료 및 제출서류의 일부를 면제 또는 삭감할 수 있다.

제 7 조(전형 시기) 지원자에 대한 전형시기(학기, 계절 학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조(전형 방법) ①시간제학생의 선발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학과(부) 단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간제학생의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여 선발하되,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계절학기의 전 학기에 선발되어 등록한 자가 전일제 취득기준학점의 1/2 이하 범위내에서 부족 학점을 계절학기에 추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 선발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21)

제 9 조(등록금) ①등록금은 학점당 등록금으로 책정하되, 정규학생의 계열별 학기당 총 등록금액을 취득 기준학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을 허가한다.

③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시간제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9 조의 2(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전형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3. 전염병 및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 타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주는 자
4. 기타 해교 행위를 한 자

제 3 장 수강신청

제 10 조(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은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속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 시간제 학생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강 신청한다.

- 제 11 조(신청 기준) ①정규학기에는 전일제 학생의 학기당 취득기준학점(18학점을 원칙으로 함)의 1/2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계절학기에는 전일제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수강가능 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12 조(미수강 신청이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13 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교무연구처의 확인을 거쳐 수강신청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 14 조(중복수강 금지) 동일과목을 중복수강 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15 조(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부)에서 심사하여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 4 장 교 과

- 제 16 조(교육과정) 시간제학생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교양필수 및 교양선택)과 전공과목(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 전일제학생과 통합·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7 조(이수단위)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한다. 기타 이에 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편입학 · 학위수여

- 제 18 조(신분 변경) ①시간제학생의 편입학은 전일제 학생의 편입학 절차에 따른다.
 ②시간제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의 인정범위는 따로 정한다.
- 제 19 조(학위수여) ①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칙 제41조 및 42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졸업 요구학점 중 85학점 이상의 교과목(학점)을 본 대학에서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3. 교양필수과목은 최초 등록한 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르되,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학과(부) 기초과목 : 전부 이수
 * 순수교양필수 : 각 영역별(기독교, 인성, 생활작문, 실용영어, 정보)로 1과목 이상 이수
 4. 전공과목은 54학점 이상을 필수, 선택과목 구분 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학위증별은 본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해당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한다.

제 6 장 학 적

- 제 20 조(학적관리) 시간제 학생의 학적은 별도로 기록·관리한다.
- 제 21 조(학년배정) 시간제 학생에게는 특별히 학년을 배정하지 아니 한다.
- 제 22 조(학적변동) 시간제 학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휴학, 복학, 수료, 제적, 재입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7 장 학생활동

- 제 23 조(학생활동 금지) 전일제 학생의 자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제 24 조(학칙준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된 학생은 본 대학교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장 제증명

- 제 25 조(제증명 발급) 시간제 학생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및 학생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생증을 도서관 출입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 26 조(발급신청)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및 학생증의 발급신청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 제 27 조(준수사항) ①발급된 등록증명서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증명을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신분을 밝히는 사안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 28 조(학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학위증서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학위번호 : 학점 ○○○○

주요 학사행정 안내

1. 학기등록

- 1)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제적된다.
- 2) 8학기 등록을 마치고 8학기까지 성적을 취득한 자로서 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게 될 때 잔여 학점수가 3학점 이하일 때는 등록금의 6분의 1, 잔여 학점수가 4학점 이상 6학점 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 잔여 학점수가 7학점 이상 9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이 없는 과목(채플, 교양세미나)의 수강에 따른 등록금은 납입하지 않으나, 등록금 이외의 기타 납입금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 2003.3.1, 2007.3.1)
- 3)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만 4주가 경과되기 이전에 일반(가사, 질병, 기타) 휴학한 자가 일정기간 이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징수한다. 단, 군입대 연장휴학원을 제출하고 제대 복학하는 경우는 그 차액을 면제한다.
- 4)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만 4주가 경과된 이후에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징수한다.
- 5) 중간고사를 포기하고 군입대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징수한다.
- 6)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당해 학기 중간고사 이전에 군입대 휴학한 자가 제대 복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은 면제하고 기타 납입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 7)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퇴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 8) 징계처벌로 무기정학 중에 있는 자도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9) 이미 납입된 등록금은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2. 수강 신청

- 1)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생종합정보시스템의 수강신청 화면에 정확히 입력한 후 확인한다.
- 2) 신청학점은 매학기당 16-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학업성적 능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학점 상한선을 준수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4.20이상 : 24학점까지
 - 나) 직전학기 평점평균 4.00~4.19이상 : 21학점까지 (법학부 2001년 입학자까지 22학점, 2002년 입학자부터 21학점)
 - 다) 전학기 평점평균 1.50~3.99 : 19학점까지 (법학부 2001년 입학자까지 20학점, 2002년 입학자부터 19학점)
 - 라)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1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 3) 기 타
 - 가) 최종학기의 수강신청은 12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 나)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 다)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라)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마) 수강신청한 과목을 이수치 않으면 "F"로 처리한다.
 - 바) 수강신청 상한선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 초과 신청한 학점은 낙제과목, 교양선택, 전공선택 및 기타 과목 중에서 교무연구처의 판단에 의해 취소된다.
 - 아)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 재입학 및 편입학(일반, 군위탁, 학사) 학생의 경우 입학 후 첫학기에 한하여 최대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4) 주·야간 수강교류

- 가) 주·야간 교류수강신청은 9학점 이내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허용하되, 특별한 사유로 9학점 이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교무연구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전공,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과목은 주·야간 수강교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 나) 주·야간에 함께 설치된 학과(부)의 학생이 특별한 사유로 전 과목 수강을 희망할 경우, 수강희망원을 작성하여 양 학과(부)장과 학장을 경우,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5) 수강신청 방법

- 가) 학과(부) 사무실에서 수업시간표를 수령한 후, 단과대학 PC실을 이용한다.(웹으로 수강신청을 할 경우 본교 홈페이지에서 수업시간표를 확인 후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 나)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종합정보시스템] 이 표시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다.
- 다) [한남대 종합정보서비스] 화면에서 사용자 화면 및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란을 클릭하여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용자번호 : 학번 8자리 ●암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라)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의 하단 좌측의 [수강신청] 의 수강신청 및 정정을 클릭한다.
- 마) [수강신청 및 정정] 화면이 나타나면, 본인의 제1전공 및 학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 바) 화면 중앙 수강신청 흰색 필드란에 학수번호 및 분반번호를 각각 입력하고, 바탕색이 회색인 항목은 자동으로 Display된다(입력불가).
- 사) 연결과목 신청은 수강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과목을 신청하면 같이 수강해야 될 과목(강독과실험 등)의 분반들이 화면에 표시되며,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의 과목 및 분반을 선택하면 연결과목 신청을 할 수 있다.
- 아) 부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8학기째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다(부)전공 신청 및 정정” 화면에서 부전공 학과(전공)을 선택해야만

부전공으로 인정 받는다.

6) 학점포기제

- 가) 이미 취득한 “C”, “D”학점 과목의 성적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취득한 다음 학기부터 학점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성적을 취소하더라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학사경고는 삭제되지 아니한다.
- 다) 교무입학처에서는 성적을 취소한 해당학기의 성적을 다시 계산하여 평점평균을 새로이 산출한다.
- 라) “C”, “D”학점 포기는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에 가능하며 1학년의 경우 전공배정 전까지 포기를 불허함.
- 마) “F”학점의 경우 교육과정 변경으로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포기 가능함.
- 바) 졸업예정자의 학점포기는 4학년 마지막 학기 성적에 한하여 7월 셋째주(8월 졸업자), 1월 셋째주(2월 졸업자)중에 신청할 수 있다.

7) 수강신청 확인 및 취소

- 가) 수강신청 확인은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포기 기간 경과 후 학과(전공)사무실에 배포된 수강신청확인서를 자세히 확인한 후, 반드시 서명한다
- 나) 수강신청 변경은 학사일정상 수강신청 변경 기간 동안 단과대학 PC실을 이용하여 변경한다.
- 다) 수강신청 취소는 학사일정상 수강신청 취소기간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수강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수 업

1) 학년, 학기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 수업일수

- 가)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 나) 천재지변 기타 학사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총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3) 수업계획서

각 교과목은 학기초 배부되는 수업계획서(Syllabus)에 의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4) 강의시간

가) 주 간

교 시	시 간	교 시	시 간
제 0 교시	08:00~08:50	제 5 교시	13:00~13:50
제 1 교시	09:00~09:50	제 6 교시	14:00~14:50
제 2 교시	10:00~10:50	제 7 교시	15:00~15:50
제 3 교시	11:00~11:50	제 8 교시	16:00~16:50
제 4 교시	12:00~12:50	제 9 교시	17:00~17:50

나) 야 간

월 - 금	
교 시	시 간
제 1 교시	18:10~18:55
제 2 교시	18:55~19:40
제 3 교시	19:50~20:35
제 4 교시	20:45~21:30
제 5 교시	21:30~22:15

4. 출석 및 결석

- 1) 학기말시험 응시자격은 총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여야 해당 과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학과 학생 중 직장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한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응시

할 수 있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는 사전에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이 날인된 공결원을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결 승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학생회 관계 등 정부지시로 불가피하게 된 경우
 - 나) 대학신문 편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경우
 - 다) 기타 학교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예비역 및 민방위 교육훈련, 징집대상자의 신체검사 등 병역의무 관계로 불가피한 결석은 4분의 1 선에서 특별 고려한다.
 - 라) 개인결석은 공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마) 개강일 이후에 등록금을 추가기간 내에 납입하는 학생은 여하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등록 전일까지 결석으로 인정한다.
 - 바) 체플은 총강의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5. 시 험

- 1)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중간 및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정기시험 외에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 2) 추가시험
 - 중간 또는 학기말 시험을 부득이한 사유로 응하지 못할 경우 추가 시험원을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학사관리팀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추가 시험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그 성적의 등급은 B+까지 인정한다.
- 3) 부정행위 처벌
 - 가) 시험 도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부정행위 과목만 “F”로 처리한다.
 - 나) 부정행위로 무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학기 전과목을 “F”로 처리한다.
 - 다) 정확처별로 인하여 시험기간 중 시험을 보지 못하였거나 수업일수가 총수업일수의 4분의 3에 미달되어 시험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해

당하기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계절학기

1) 계절학기 수강자격

가) 계절학기에서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성적이 우수하거나 복학, 재수강 또는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휴학 중에 있는 자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다.

나) 계절학기는 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신청 및 개설과목

가) 매 계절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은 9학점 이내이며, 수업시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나) 과목 개설은 1과목당 20명 이상, 전공과목은 개설전공(학과)학년 편제정원의 25%이상 수강신청자가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학업성적 평가

1) 성적평가는 시험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학업성취도를 담당교수가 성적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성 적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가)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D"급 이상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급	실점	평점	등급	실점	평점
A ⁺	97~100	4.5	C ⁺	77~79	2.5
A _o	94~96	4.3	C _o	74~76	2.3
A ⁻	90~93	4.0	C ⁻	70~73	2.0
B ⁺	87~89	3.5	D ⁺	67~69	1.5
B _o	84~86	3.3	D _o	64~66	1.3
B ⁻	80~83	3.0	D ⁻	60~63	1.0
			F	0~59	0.0(낙제)

나) 평점평균의 계산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 산출방법은 성적평점계를 수강신청 학점으로 나눈다.

즉, $(\text{과목별평점} \times \text{학점})$ 의 총합

$\frac{\text{수강신청 총학점}}{\text{수강신청 총학점}}$

다만, 졸업사정시 평점평균 산출방법은 "F"로 평가된 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학점수는 제외하고 산출한다.

3) 성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

가)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 인정

학기도중 중간시험만을 마치고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입대된 자는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간주 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개강일로부터 군입대일 1주일 전까지의 수업시간수를 총 수업시간수로 하여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된다.
- ② 중간시험 응시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일부 교과목만 응시했을 경우 불응한 과목은 자동 "F"로 처리된다.

나) 편입생의 학점 인정

(1)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학점 중 본교의 소속학과(부)의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해당 학과(부)의 심의를 거쳐 교무연구처에서 최종 인정한다.

- ① 편입학생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 제2학년 1학기(2학기인정) : 총 35학점
 - ㉡ 제2학년 2학기(3학기인정) : 총 52학점
 - ㉢ 제3학년 1학기(4학기인정) : 총 70학점
 - ㉣ 제3학년 2학기(5학기인정) : 총 87학점
 - ㉤ 군위탁 편입 : 총70학점
 - ㉥ 학사 편입 : 총 72학점

② 인정한 학점내에서 최대 15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해당 학과(부)의 심의 및 교무입학처의 인정을 받은 학점은 학적부에 "편입학 ○○학점 (교양○학점, 전공○학점)인정"으로 기재한다.

- ④ 전공 인정학점은 인정된 과목과 학점수를 병기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 ⑤ 전공과목 학점인정은 동일 교과목에 한하며, 전적대학 교과목의 학점수가 본교 교과목의 학점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학점수는 본교 교과목 학점수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다.
 - ⑥ 편입학생은 졸업시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평점평균을 산정하며, 인정된 전적대학의 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2) 편입학생은 해당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① 제2학년 1.2학기 편입학생은 2학년부터 개설되는 필수과목(전공, 교양, 계열기초)과 60학점(법학부 60학점)이상의 전공과목(전공 인정학점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3학년 1.2학기 편입학생은 3학년부터 개설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법학부 60학점)이상의 전공과목(전공 인정학점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군위탁 편입학생은 3학년부터 개설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법학부 60학점)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학사 편입학생은 3학년부터 개설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법학부 60학점)이상의 전공과목(전공 인정학점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2004년 이후 편입생의 전공과목(전공 인정학점포함)이수학점은 60학점(건축학전공 108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3) 편입학생은 전과(부), 조기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8. 휴학, 퇴학 및 제적

1) 휴 학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의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

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가) 종 류

- ① 일반휴학(가사, 질병)
매학기 등록기간 종료이전까지는 등록금 납입없이 휴학이 가능하다. 등록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을 하여야 한다.
-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1/4후에 휴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과 학기를 포기하여야 한다.
- ③ 군입대 휴학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영장) 사본을 지참,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소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입영통지서(영장)사본 1부 및 본인, 보호자 인장을 지참하여 학적관리팀에서 휴학기간 연장 등의 휴학 절차를 필하고 입대하여야 한다.
- ④ 일반휴학중에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입대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 일반휴학을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일반휴학기간 초과로 제적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나) 절 차

학적관리팀에서 본인이 직접 휴학원을 제출한다.

다) 준비물

- ① 본인 및 보호자 인장
- ② 입영통지서 원본 및 사본(군입대의 경우), 종합병원 진단서(질병의 경우)

라) 휴학의 제한

- ① 휴학원은 학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2년), 계속적으로는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제적된다. 다만, 군입대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병사유인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2학기(1년)까지 연장허가할 수 있다.
- ③ 1학년의 경우 군입대, 질병사유 및 직장관계(야간강좌)이외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을 불허한다.

마) 휴학시 성적처리

- ①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 ② 학기도중 중간시험만을 마치고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입대된 자는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ㄱ. 개강일로부터 군입대일 1주일 전까지의 강의시간수를 총 강의시간수로 하여 4분의 3 이상 출석인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된다.
- ㄴ. 중간시험 응시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일부 교과목만 응시했을 경우 불응한 과목은 자동 "F"로 처리된다.

2) 자 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사유를 기재하여 원서를 작성 날인하고 학부(과)장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제 적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제적된다.

-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 자퇴한 자
- ㉣ 성적경고로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 ㉤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포함)
- ㉥ 재학년한의 초과된 자(재입학 불가)
- ㉦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9. 복학 및 재입학

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다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구 분

가) 복 학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시점에서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면, 복학이 된다.

- ① 시기 : 규정된 등록기간 내
- ② 절차 : 학적관리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나) 재입학

제적된 학생에 한해 실시하며, 그 제한은 학칙 시행세칙 제43조(재입학)와 같다.

10. 전공변경(전과)

1) 허가조건

- 전공변경(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3학기 이상 등록을 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공변경(전과)할 수 있다.

2) 허가범위

- 모집단위가 학과(단일전공)인 경우에는 학과(전공)별 편제정원의 120% 범위내에서 전공변경(전과)를 허용한다.
- 모집단위가 학부인 경우에는 매학기별 복학신청 종료후 재학생수가 1학년 2학기말 전공배정 당시의 "전공배정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다만, 비사범계 학생의 사범대학 학과로의 전공변경(전과), 편입학생과 특기자입학생의 전공변경(전과)은 불허하나 대학 학생정원령에 의해 폐지한 학과의 재학생이 전공변경(전과)할 때는 예외로 한다.

3) 절 차

- 가) 지원자는 소정의 원서와 소속대학(부)장의 승인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공변경(전과)한다.
- 나) 학과(전공)는 전공변경(전과)의 지원을 받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적격여부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유의사항

- 가) 전공변경(전과)한 자의 교과목 이수수는 전입학과(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나) 전공변경(전과) 시점의 학년과 동일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1. 학사징계

학업성적이 열등한 학생에게는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사징계를 가하고 학적부에 등재한다.

1) 학사경고

- 가)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0 미만인 학생에게 하되, 학과로 통보하고 그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 나) 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시 1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학사경고 제적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게 되면 제적 처리되며, 본인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3) 징계처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및 퇴학처분을 한다.

-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다) 학업이 열등하여 성업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라)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 마)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4) 학사징계의 결과

징계의 결과는 본인, 보호자 및 학과(부)장에게 통고하며 이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따라서 졸업 후 취업시에도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2. 졸 업

1) 정규졸업

규정된 수업년한의 재학과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졸업종합시험, 작품발표 포함)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가) 졸업사정

졸업사정은 교수회의에서 행하며, 졸업이수학점의 취득여부, 필수교과의 이수여부, 졸업논문

합격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정한다. 이러한 졸업사정의 결과에 따라 학위수여 여부가 결정된다. 그 사정 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140학점(사범대학을 제외한 인문·사회계열은 136학점, 법학부의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50학점, 건축학전공은 16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그 성적의 전체 평점평균이 2.00이상인 자로 한다.
- ② 학과별 교육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교양과목(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 별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한다.(학칙 시행세칙 중 별표 1 참조)
- ③ 졸업논문심사(졸업종합시험, 작품발표 포함)에 합격한 자

나) 절차

대상자 선발 졸업사정→대학 교수회의 심의→졸업생 확정→졸업대장 작성→졸업증서, 학위등록증 작성→학적부 및 등록대장 정리→학위수여

2) 조기졸업

학업능력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기졸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면학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기졸업 지망신청에 의하여 선정된 학생이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사정과 절차에 의해 졸업요건을 갖추는 때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가) 대상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 또는 성적 우수자의 학점 초과취득으로 140학점((사범대학을 제외한 인문·사회계열은 136학점, 법학부의 2001학년도 이전입학생은 150학점, 건축학전공은 165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이수성적 전체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자는 6학기(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 수료 후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나) 절차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4주 이내에 소정의 "조기졸업신청서"를 학과(부)장, 학장을 거쳐 교무입학처 학적관리팀에 제

출하여야 한다.

3)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졸업예정자는 졸업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단, 졸업논문의 제출이 부적당한 학과(부)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해 졸업종합시험 또는 실험실습보고서, 작품발표로 대신할 수 있다.

가) 논문작성 및 제출가격

① 졸업논문 작성계획서(실기발표 계획서, 졸업종합시험신청서)는 6학기를 이수(108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기에 재학증인자,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자이다. 단, 4년제의 경우 6학기 이수자 중 100학점 이상, 5년제는 8학기 이수자 중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학점 취득 가능성을 심사하여 논문작성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논문작성 제출자격을 얻은 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다음 각 항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학과(부)별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지도받아야 한다. 논문은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 성격에 따라서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각 연구자는 연구분야의 중복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ㄱ. 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학기 3월 15일(전기졸업예정자) 및 9월 15일(후기졸업예정자)까지 소속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논문작성의 방법, 규격, 양식 등은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

나) 종합시험

① 시험과목

종합시험의 과목(혹은 영역)은 해당학과(부)에서 결정 공고하며, 그 관리는 소속대학장이 한다. 각 과별 최근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교육 학 과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교육행정학, 교육자료분석, 교육과정론

가정교육과 : 영양학, 피부재료학, 주거학, 가정경영론, 아동학

수학전공 :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광·전자물리학전공 : 전자기학, 역학, 양자물리학

화학전공 :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식품영양학과 : 식품미생물학 및 위생법규, 생화학, 식이요법, 영양학, 식품화학, 단체급식

생명과학전공 : 동물분류학, 세포학, 식물분류학, 동물생리학, 식물생리학, 유전학

고분자공학전공 : 고분자유기, 고분자물리, 실험결과 발표

생활체육학과 : 체조, 자격증1, 자격증2, 자격증3

의 류 학 과 : (졸업작품)

미생물학전공 : 미생물분류학, 미생물유전학, 바이러스학, 미생물생리학, 생화학, 균학

컴퓨터공학전공 : 전자계산기구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통신, 소프트웨어공학, 운영체제

산업시스템공학전공 : 생산계획 및 시스템공학, 품질 및 정제성공학, OR 및 확률, 컴퓨터공학

건축공학전공 : (졸업작품)

토목환경공학학과 : 구조역학, 토질역학, 수리학, 철근 및 콘크리트

전자공학과 : (졸업작품)

정보통신공학전공 : 전자회로, 정보통신기기, 전자계산일반, 정보통신시스템

기계공학전공 :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동역학, 기계공학법, 영어 또는 제2외국어

경영정보학전공 : 졸업시험, 자격증

다) 졸업작품

예능계 4학년 학생으로서 6개 학기를 이수하고 7개 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이 그 자격이 된다.

① 졸업작품 규격

ㄱ. 동양화, 서양화 : 200호 이내

ㄴ. 조소 : 높이 3m 이내

ㄷ. 판화 : 쉐트지 전지 이내

ㄹ. 서예 : 높이 3m 이내

ㅁ. 사진 : 전지 이내

ㅂ. 공예 : 100, 200, 300cm 이내

4) 학위수여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칙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13. 부전공 제도

1) 신청

부전공 신청은 8학기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다(부)전공신청 및 정정” 화면에서 부전공학과(전공)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예·체능계 학과(부)로의 부전공은 제외한다.

2) 부전공 표시인정

각 학과(부)에서 제시한 부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부전공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부전공 이수를 표시한다.

3) 부전공 학점인정

- 가) 이미 취득한 부전공 과목학점은 부전공 학과(부)를 변경 및 취소하였을 경우 그 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나) 부전공 신청 전에 취득한 과목이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해당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될 때는 부전공 과목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4. 다전공제도

1) 신청

가) 다전공(동일학부와 타학부 포함)을 희망하는 자는 6월 첫째주, 12월 첫째주 학생종합정보시스템의 “다(부)전공 신청 및 정정”에서 2전공이나 3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중국전공 다전공은 매 학년도 3월에 실시하는 “위탁교육생 선발시험”으로 다전공 신청과 선발을 대신한다.

- 동일학부를 다전공할 때
 - 2학기 이상 이수자 신청가능
- 타학부를 다전공할 때
 - 2학년 1학기 말부터 3학년 2학기 말까지 신청가능
- 단축복학하여 3학기를 이수하여야 전공배정을 받는 경우는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전공배정을 받는 시점에 다전공 신청 가능하다.

2) 선발

가) 동일학부 내의 다전공은 신청 및 포기 횟수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나) 타학부로의 다전공은 전공별 편제정원의 140%(사범대 학생 150%이내 적용)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승인은 1인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또한 3전공은 2전공 이수 중인 자로 2전공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다전공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자가 전공별 편제정원 140%(사범대 학생 150%이내 적용)를 초과할 때의 선발 방법

- 제 1순위 : 전체 교과목 성적순
- 제 2순위 : 학부 기초과목 성적순
- 제 3순위 : 지망전공 교과목 성적순

다) 사범계 학과에서의 다전공도 학과 편제정원의 140%(사범대 학생 150%이내 적용)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비사범계에서 사범계 학과로의 다전공도 허용된다. 다만, 비사범계에서 사범계 학과로의 다전공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며, 사범계학과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자격기준은 비사범계 자격기준(5호)으로 표시된다.

3) 학점이수

- 가) 타학부(과)·연계전공 : 36학점 이상, 법학부 : 48학점 이상, 건축학전공 72학점 이상
- 제1전공만을 이수할 경우 전공을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제1전공만을 이수할 경우 전공을 54학점(법학부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계 학과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서 다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1, 2전공 모두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대상자는 사범계 학생과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제한된다.
- 나) 전공과목은 제2, 3전공의 다전공 시작 시점의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 다) 1999학년도 입학자로부터 학부기초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다전공이 가능하다. 다만, 연계전공 이수자, 1998학년도 입학자는 학부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다전공을 할 수 있다.

4) 학점 인정

다전공 이수 전에 부전공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면제

과목과 인정과목이 다전공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전공 시작 전에 어떤 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과목으로 제1전공과 제2전공으로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나, 제3전공으로는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 면제과목이란 : 타학부로 다전공을 할 때 다전공하지 않는 전공의 학부기초과목 중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
- 인정과목이란 : 타학부로 다전공 할 때 다전공 시작 이전에 이수했던 과목 중 다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

5) 논문제출

다전공자는 이수한 다전공별로 학위가 수여되므로 제1전공 및 제2, 3전공(연계전공 포함)에 대한 졸업논문(종합시험, 졸업작품 포함)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5. 재증명 발급

1) 각종 증명서 발급

학부 학생들을 위한 취업 및 각종 시험 응시에 필요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증명서, 교직과정 이수확인서, 학적부사본, 휴학증명서, 장학증명서, 입학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입학예정증명서 등의 재증명을 국문·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의 학위수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있고, 시간강사제직,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2) 접수처리

휴학원, 복학원, 자퇴원, 예비군대원신고, 학생증(ID-Card)발급, 주소 정정등 신청 즉시 처리해 주고 있다.

3) 민원업무 : FAX 업무

본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민원 업무를 가까운 동사무소(면사무소), 구청 등에서 FAX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FAX민원 창구를 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민원업무를 신청 즉시 처리하여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등 한남의 모든 가족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양질의 Service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사랑, 고객위주의 국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